

월간 재정포럼

권두칼럼

경제사회의 변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이 영

현안분석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김빛마로

정책토론포트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투자세액공제 시행 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정포럼 바로가기

월간 재정포럼



월간 재정포럼

2025년 1월 17일 발행

통권 제34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E-mail: pub@kipf.re.kr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강신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디자인·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TEL 02-2269-9917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KIPF

CONTENTS

권두칼럼

04

경제사회의 변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현안분석

10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책토론포럼

34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44

미국-투자세액공제 시행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주요국의 재정동향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권두칼럼



경제사회의 변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경제사회의 변화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과 도전 과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민주화, 사회제도의 발전을 이루면서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굴곡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국내적으로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대내외 도전과제들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불균형, 소득불균형, 디지털전환, 세계경제 블록화이다. 2000년대 초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낮은 소득이었으며 이때는 성장 전략을 어떻게 펼치는가가 핵심 정책 논의였다.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인구, 불균형, 성장잠재력 약화, 세계경제 변화 등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00년대 초 이후 나타난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대부분 조세 및 지출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 역할과 미래 비전

필자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과 같은 5가지 분야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제시된
목표 또는
효과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행태변화,
시장균형,
중장기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이 증명된
정책이어야
한다.

1. 증거 기반의 조세·재정 정책 설계

첫째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엄밀한 이론,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정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증거를 엄밀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엄밀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디자인하고 관련 학술적, 정책적 논의를 선도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 기반의 조세·재정 정책의 산실(Evidence-based Public Policy Provider)’이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표를 얻기 위해 제안되는 정책들은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기영합적 정책의 실패 원인은 정책 고안 단계에서 경제주체들의 정책에 따른 행태 변화, 시장균형의 변화,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은 제시된 목표 또는 효과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행태변화, 시장균형, 중장기 재정건전성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이 증명된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증거는 사용한 가정과 모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론적 증거에 덧붙여 실증 및 사례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엄밀한 분석방법론을 현실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얻은 실증 분석 결과와 정책이 시행된 여건과 환경까지 고려한 사례 분석의 결과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러한 이론, 실증, 사례 증거를 제시하는 정책연구 기관으로의 위상을 보다 강화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정책 연구

둘째로, 저출생 고령화, 소득불평등, 지역불균형, 세계경제 블록화 등 사회 경제 변화에 부합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이미 인구문제에 대한 1차 심층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25년에도 추가적인 심층평가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인구정책에 덧붙여 지역균형 예산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지역 교육 행재정 평가를 한국조세

재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균형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미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균형 예산에는 여러 낭비 요소가 있었는데, 체계적인 영향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교육 예산의 경우 1991년 교육자치 시행 이후 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지역교육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루어져 초·중등교육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세계경제 블록화로 인한 미국의 법인세의 추가 인하와 관세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세 및 무역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 관련 예산, 지역균형 예산, 지역교육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나 곧 수행할 예정으로, 재정평가의 핵심이 될 영향평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3.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구

셋째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2000년대 초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이후 재정규율이 약화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들이 여러 정부에서 실시되면서 훼손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4. 재정평가제도의 진화와 영향평가의 중요성

넷째로, 재정평가제도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초기의 성과목표의 설정, 확인, 점검 방식에서 출발하여 성과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을 넘어, 현재는 여러 재정사업의 사회적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와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도출해야 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인구 관련 예산, 지역균형 예산, 지역교육 예산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나 곧 수행할 예정으로, 재정평가의 핵심이 될 영향평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재정집행을 조정, 추경 편성, 차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 등의 거시재정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지표 발표를 넘어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시재정 지표 분석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거시재정정책 연구와 재정동향 브리프

다섯째로, 거시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으로써, 거시재정정책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거시재정에 대한 지표들을 매월 '재정동향'에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동향'은 단순히 지표만을 발표하고 있어 거시재정정책 방향 도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집행을 조정, 추경 편성, 차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 등의 거시재정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지표 발표를 넘어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시재정 지표 분석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예상하지 못한 정치 변화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형태로 통과되고 거시 경제 불안정이 야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러한 삭감 예산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어떤 규모로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거시 재정동향을 분석하는 전문 기관이 부재하여 제대로 분석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동향과 관련된 이슈를 정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5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냄으로써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증거 기반의 조세·재정 정책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개선된 조세·재정 정책이 우리나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안분석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bmrkim@kipf.re.kr

우리나라 R&D 조세지원 현황 및 개선 방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심으로¹⁾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정부는 민간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 혁신 결과물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해외 국가들 역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R&D 지원은 크게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가장 대표적인 민간 R&D 지원 재정사업으로 볼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 1,364개 세부사업(계속사업 1,178개, 신규사업 186개)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6.5조원 수준이다.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큰 조세지출 실적을 보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포함) 제도의 경우 2022년 실적치 기준 3.7조원 규모이며 이는 2022년 전체 국세감면액의 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²⁾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³⁾ 또한 2025년 1월에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방안이 추가로 발표되었다.⁴⁾

1) 본고는 김빛마로·신상화·이동규·홍용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일반(「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심층평가」, 2024의 일부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됨

2) 해당 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

3)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 6. 26.

4) 관계부처 합동,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2.

많은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 R&D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질적 성과가 낮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민간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R&D 관련 정부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많은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민간 R&D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질적 성과가 낮다고 지적⁵⁾하고 있으므로 정부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R&D 조세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재정지원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요 제도가 대부분 반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일반’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별도의 일몰 조항이 없으며,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2010년 도입 이후 계속해서 적용기한이 연장되면서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⁶⁾ 특히, 최근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 R&D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한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운영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II. 우리나라 R&D 현황 및 추이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최근 민간 R&D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총연구개발비 규모는 1980년대 중반부터 유의미하게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최근에도

5) 안수용·조용희(2022); 김학수(201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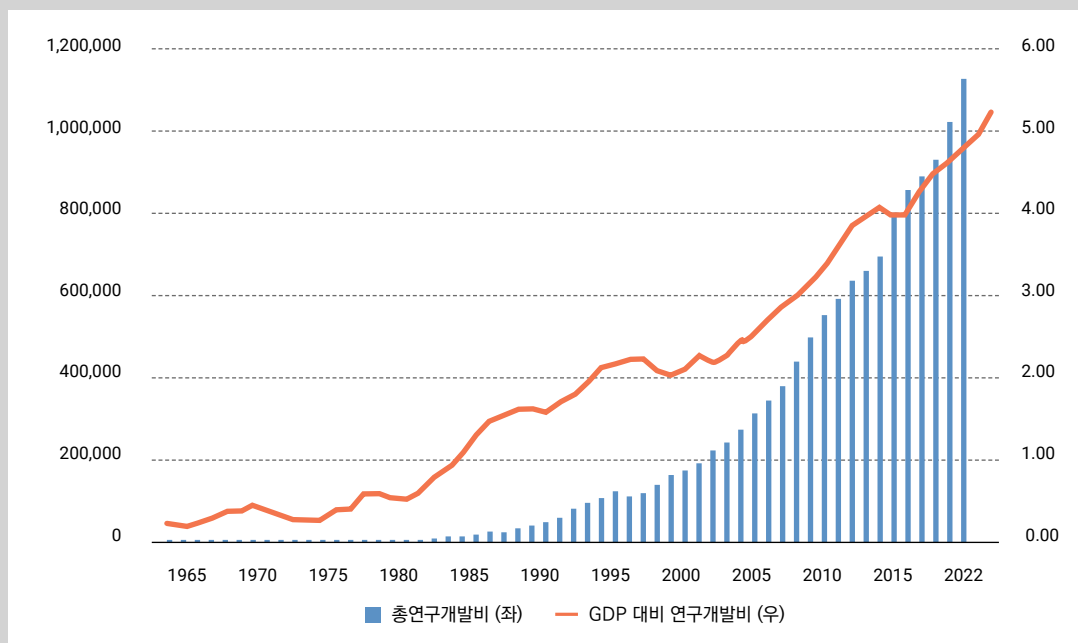
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12월10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

7) 본고에서는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를 참고함

2018년 85.7조원, 2020년 93.1조원, 2022년 112.6조원으로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총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최근에도 2018년 4.52%에서 2022년 5.21%로 증가하였다. 특히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규모는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⁸⁾ 중 세계 6위 수준이며, GDP 대비 비중은 세계 2위에 해당한다.

그림 1 총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억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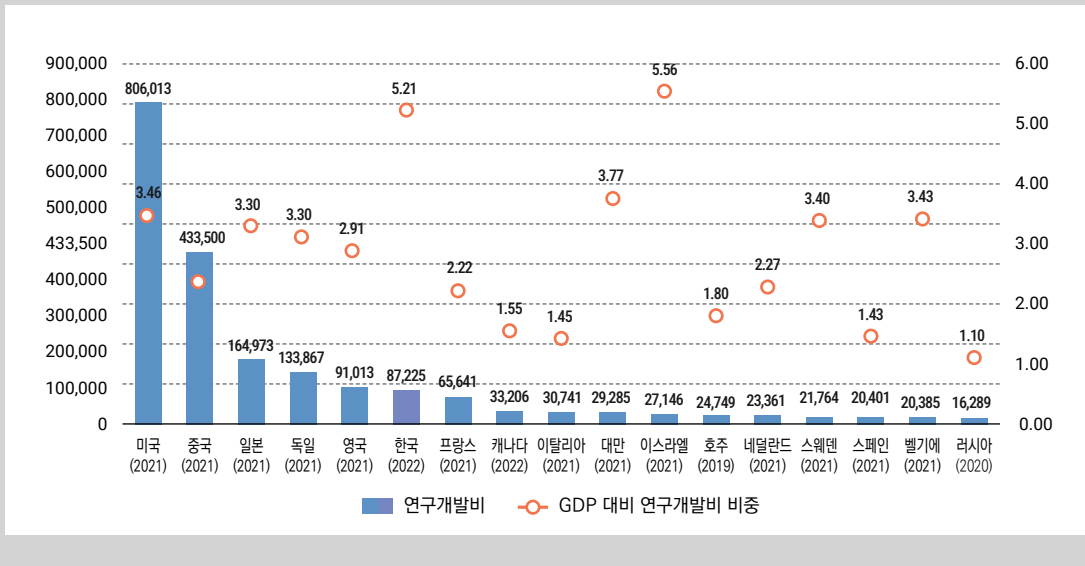
- 주 1. GDP는 2015년 기준
2. 2022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의 2022년 수치

출처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8)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 2023에서 집계한 국가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국가별 2022년 데이터가 공표되면 순위 변동 가능

그림 2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비교

(단위: 백만달러, %)



주 세계 순위는 OECD에서 집계·발표(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3–September)한 국가(OECD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의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국가별 2022년 데이터가 공표(MSTI 2024-1)되면 순위 변동 가능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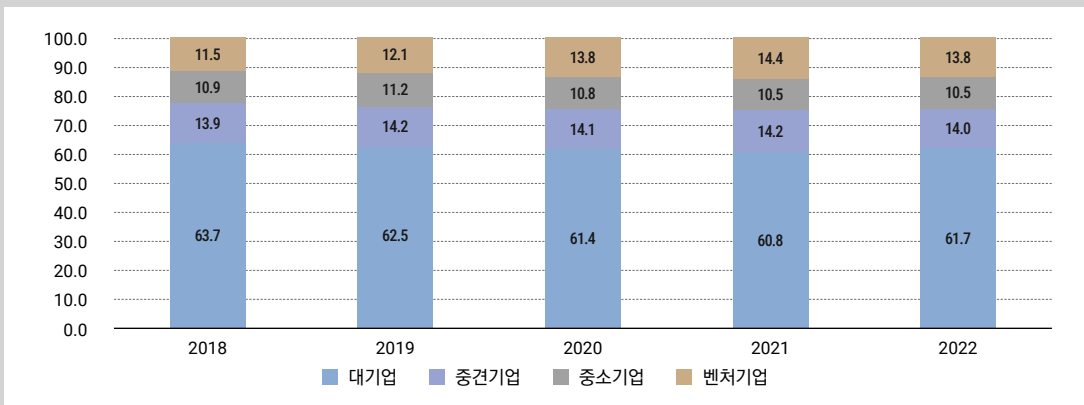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 R&D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에 대한 정부 지원 비중은 0.35%로 OECD 평균인 0.21%보다 높았다.⁹⁾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원 비중은 미국(0.26%), 일본(0.14%), 중국(0.13%)에 비해 높고, 영국(0.48%), 프랑스(0.42%)보다는 낮았다.

R&D 규모를 연구수행 주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업체가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89조 4,213억원으로 전체의 79.4%를 차지하였으며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지출액은 각각 12조 9,186억원(11.5%)와 10조 3,061억원(9.1%) 규모이다. 추세적으로는 기업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정부 지원은 직접 자금지원(direct funding)과 조세지원(tax support)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직접자금지원 비중 및 조세지원 비중은 각각 0.22%와 0.13%임

그림 5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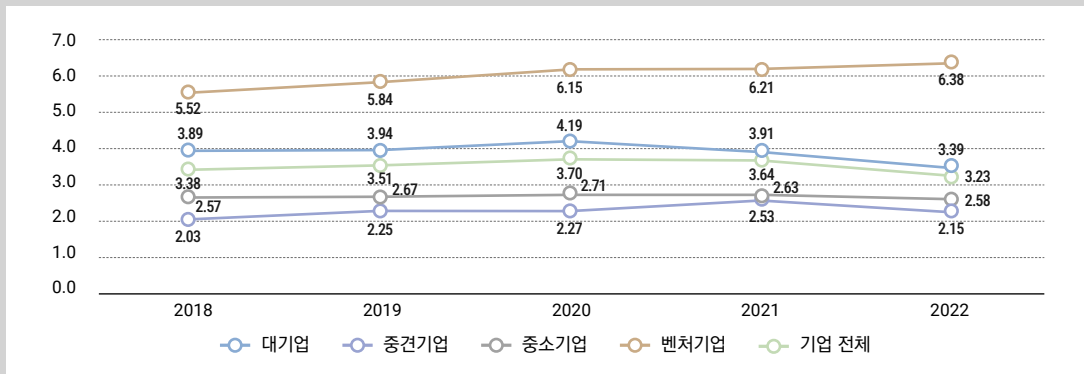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그림 6 기업유형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추이

(단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정부 지원 수준 등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R&D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도 R&D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업 R&D는 대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R&D 관련 조세지원제도

제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출 규모를 총량 관점에서 소개하고, 기업들이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의 운영상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변화 추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1.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을 총 23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총량은 2023년 실적 기준 5.1조원이며,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 수준이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액이 각각 3.6조원과 3.7조원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유의미한 정부 재원이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로 구분되지만, 제도의 실질적 내용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제도도 일부 존재하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¹⁾

연구개발에 대한 총조세지출액 대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적 기준 동 제도 조세지출액은 4.6조원이며,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3.0조원과 3.1조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 제도 다음으로 조세지출액 규모가 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사실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동 제도 조세지출액이 연구개발 분야 총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이상으로 확대(2023년 실적 기준)되었다.

연구개발에 대한 총조세지출액 대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적 기준 동 제도 조세지출액은 4.6조원이며,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3.0조원과 3.1조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 제도 다음으로 조세지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정부 지원 수준 등
적어도
양적 측면에서는
R&D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도
R&D의 양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기업 R&D는
대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경우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제도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출액 규모가 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은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사실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동 제도 조세지출액이 연구개발 분야 총조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 이상으로 확대(2023년 실적 기준)되었다.

표 1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 야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33,814	5.3	37,848	5.4	35,894	5.0	38,136	4.9
2 연구개발	41,443	6.5	50,719	7.3	35,557	5.0	37,402	4.8
3 국제자본거래	17	0.0	26	0.0	0	0.0	0	0.0
4 투자촉진	22,729	3.6	21,750	3.1	18,189	2.5	43,599	5.6
5 고용지원	39,587	6.2	45,897	6.6	49,845	7.0	52,863	6.8
6 기업구조조정	3,476	0.5	2,303	0.3	4,026	0.6	4,197	0.5
7 금융기관구조조정	0	0.0	0	0.0	0	0.0	0	0.0
8 지역균형발전	24,072	3.8	16,051	2.3	13,448	1.9	14,765	1.9
9 공익사업지원	8,457	1.3	9,767	1.4	6,245	0.9	6,659	0.9
10 저축지원	19,531	3.1	26,026	3.7	34,517	4.8	38,114	4.9
11 국민생활안정	195,245	30.7	218,357	31.3	230,553	32.3	251,066	32.2
12 근로·자녀장려	50,013	7.9	52,309	7.5	57,930	8.1	58,420	7.5
13 기타직접국세	34,716	5.5	36,672	5.3	38,404	5.4	37,504	4.8
14 간접국세	123,372	19.4	132,540	19.0	140,940	19.7	145,772	18.7
15 외국인투자	933	0.1	1,143	0.2	776	0.1	813	0.1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275	0.4	1,944	0.3	1,710	0.2	1,799	0.2
17 기업도시	49	0.0	72	0.0	36	0.0	38	0.0
18 지역발전	25	0.0	7	0.0	11	0.0	12	0.0
19 농협구조개편	565	0.1	619	0.1	755	0.1	795	0.1
20 공적자금 회수	0	0.0	0	0.0	0	0.0	0	0.0
21 수협구조개편	61	0.0	72	0.0	73	0.0	77	0.0
22 사업재편 계획	0	0.0	0	0.0	0	0.0	0	0.0
23 기타	35,104	5.5	0	0.0	0	0.0	0	0.0
합 계	635,484	100.0	42,541	6.2	45,396	6.4	48,150	6.2

출처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2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 분야 주요 제도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¹⁾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06	52	116	114	75	7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4	41	120	205	64	67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60	335	676	652	557	58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891	1,075	1,785	1,905	1,895	2,02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719	731	876	1,047	2,371	2,56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59	86	112	180	204	215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액 총합 ²⁾ (B)	30,488	30,270	41,443	50,643	35,452	37,29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중 (100*A/B)	89.7	90.2	89.8	91.4	83.4	83.1

주 1)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중 2023년 기준 조세지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제도로 한정하여 정리
2) 연구개발 분야 조세지출액 총합은 조세지출액 100억원 미만 제도까지 포함하여 계산

출처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본 소절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로 구분된 조세지출제도 중 기업 활용도 및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민간 혁신활동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

가. 제도 개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적용기한: 없음,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2027년 12월 31일)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에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는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되며 자체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구분¹²⁾된다. 또한 인력개발¹³⁾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12)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 ①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②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③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④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⑤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⑥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⑦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⑧이미 기획된 콘텐트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⑨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13) 인력개발비용은 일반 분야 공제만 적용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액공제 혜택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기업규모 및 기술 분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경우 당기분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40%(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은 최대 30%)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당기분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은 최대 40%)를 세액공제한다. 일반 분야는 기업이 ① 당기분과 ② 증가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 ①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 ×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
- ② 증가분: 직전연도 지출액 초과분 × 25%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표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신성장·원천기술(①+②)	① 기본공제율	30%	20%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② 비율분	$\frac{\text{해당연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text{해당연도 수입금액}} \times 3,$ 한도 1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15%)		
	(①+②) 한도	40%	3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40%)	30%
국가전략기술(①+②)	① 기본공제율	40%	30%	
	② 비율분	$\frac{\text{해당연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text{해당연도 수입금액}} \times 3, \text{ 한도 } 10\%$		
	(①+②) 한도	50%	40%	
일반 연구·인력(① 또는 ②)	① 증가분 ¹⁾	50%	40%	25%
	② 당기분 ²⁾	25%	8% (최초 3년 15%, 추가 2년 10%)	당해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1/2, 한도 2%

주 세액공제율은 투자연도 기준으로 적용
 1) 증가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직전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2) 당기분: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https://law.go.kr/> 검색일자: 2024. 3. 14.

나. 제도 신고 현황

다음으로 최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최근 3년(2021~2023신고연도) 조세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및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출액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분야 총조세지출액은 2021년 2.0조원에서 2023년 2.4조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2021년 6천억원에서 2023년 9,500억원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2022년 최초 신고 된 국가전략기술 분야 조세지출액 규모는 4,500 억원에서 2023년 1.2조원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일반 분야와 달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일반법인의 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3신고연도 기준 전체 수혜기업 중 중소기업 숫자의 비중은 일반 분야 96.3%, 신성장·원천기술 69.9%, 국가전략기술 29.4%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당 평균 수혜액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분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신고연도 기준 평균 수혜액은 국가전략기술 352.0억원, 신성장·원천기술 29.5억원, 일반 분야 0.6억원으로 확인된다.

표 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2021~2023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2021년	중소기업	신고법인 수(A)	36,766	197	-
		금액(B)	1,266,156	27,133	-
		평균금액(B/A)	34	138	-
	일반법인	신고법인 수(A)	1,364	86	-
		금액(B)	767,240	573,719	-
		평균금액(B/A)	562	6,671	-
	합계	신고법인 수(A)	38,130	283	-
		금액(B)	2,033,396	600,852	-
		평균금액(B/A)	53	2,123	-
2022년	중소기업	신고법인 수(A)	39,652	205	8
		금액(B)	1,451,153	29,165	1,773
		평균금액(B/A)	37	142	222
	일반법인	신고법인 수(A)	1,539	101	16
		금액(B)	834,606	849,963	450,662
		평균금액(B/A)	542	8,415	28,166
	합계	신고법인 수(A)	41,191	306	24
		금액(B)	2,285,759	879,128	452,435
		평균금액(B/A)	55	2,873	18,851
2023년	중소기업	신고법인 수(A)	41,425	225	10
		금액(B)	1,485,165	26,624	3,229
		평균금액(B/A)	36	118	323
	일반법인	신고법인 수(A)	1,597	97	24
		금액(B)	890,835	922,593	1,193,612
		평균금액(B/A)	558	9,511	49,734
	합계	신고법인 수(A)	43,022	322	34
		금액(B)	2,376,000	949,217	1,196,841
		평균금액(B/A)	55	2,948	35,201

주 연도는 신고연도 기준

출처 Tasis, 「8-3-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 현황」,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기술범주별
혜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을
적절히 구분 및
선정하는 것은
제도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운영상 쟁점

가. 우대 기술의 범위

동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R&D 분야를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혜택 수준을 차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분야는 당기 분 기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일반기업 0~2%,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30~40%, 중견기업¹⁴⁾ 및 일반기업 20~30%,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 30~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동일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기술범주별 혜택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기술을 적절히 구분 및 선정하는 것은 제도 효과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분야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술이 최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7]의 기술로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기술 등의 14개 분야 53개 세부분야 270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6항 [별표 7의2]의 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66개 기술을 의미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최근 변화(〈표 5〉 참고)를 살펴보면 범주, 분야, 기술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7~2024년 기간 동안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주는 11개에서 14개로, 분야는 37개에서 53개로, 세부 기술은 157개에서 270개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세부 기술 수 기준 2022년 260개에서 2023년 258개로 소폭 감소한 뒤 2024년 270개로 증가하면서 그 증가 추세가 다소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 기술 수가 감소한 것은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일부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¹⁵⁾

〈표 6〉은 신성장·원천기술 신규도입 및 폐지 기술 수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대폭 개정으로 157개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하며 현재의 구조를 지니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2018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첨단소재부품장비 범주가 신설되고 융복합소재 기술이 대폭 추

14)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40%

15)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다시 논의

가되면서 총 51개의 신규기술이 편입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20개 이상의 신규기술이 추가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숫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10개 이상의 신규기술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반면 폐지된 기술 수의 경우 대체로 신규 도입 기술 숫자에 비해 적었으며, 2021년과 2023년에 폐지 기술 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제외된 17개 기술(〈표 7〉 참조)은 2022년 도입된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편입되었으므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확대된 것이다. 2023년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6월 7일과 8월 29일 개정에서 신규도입 기술 없이 각각 10개와 4개의 신성장·원천기술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기술 전부 국가전략기술에 편입되었다. 또한 2024년 2월 29일에는 15개의 기술이 신규 도입되고 3개의 기술이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기술 3개 모두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되었다. 즉, 신성장·원천기술 기술 범위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5 연도·범주별 기술 수(신성장·원천기술)

범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로봇	13	13	16	17	17	17	17	18
미래형자동차	9	9	10	11	11	9	4	4
바이오헬스	20	20	20	24	25	27	23	23
방위산업	-	-	-	-	-	-	-	3
에너지환경	38	38	39	42	49	24	26	29
융복합소재	10	10	13	25	23	24	25	25
지능정보	21	21	23	23	24	24	25	25
차세대방송통신	7	7	7	8	8	8	8	8
차세대소프트웨어및보안	9	9	9	9	9	9	9	9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11	11	15	23	29	30	30	30
첨단소재부품장비	-	-	-	20	20	20	20	25
콘텐츠	10	10	10	10	8	8	8	8
탄소중립	-	-	-	-	-	48	51	51
항공우주	9	9	11	11	12	12	12	12
총합	157	157	173	223	235	260	258	270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각 연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6 신성장·원천기술 신규도입 및 폐지 기술 수 추이

구분	신규도입 기술 수	폐지 기술 수	순증
2018년	0	0	0
2019년	16	0	16
2020년	51	1	50
2021년	21	9	12
2022년	27	2	25
2023년	12	14	-2
2024년	15	3	12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각 연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7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된 기술 현황

범주	분야	기술
2023.6.7 개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이동(총 10개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주행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구동차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탄소중립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 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2023.8.29 개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이동(총 4개 기술)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바이오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바이오 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 의약품 부품 장비설계·제조기술
2024.2.29 개정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이동(총 3개 기술)		
탄소중립	수소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산업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별표 7의2] 참고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국가전략기술 변화 추이(〈표 8〉 참고)를 살펴보면, 2022년 최초 도입 이후 2년 연속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에는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총 4개의 새로운 범주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

에는 수소 관련 3개 기술, 디스플레이 관련 1개 기술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추가된 기술들은 앞서 논의한 신성장·원천기술에서 편입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된 기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기술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기술에서 제외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연도-범주별 기술 수 (국가전략기술)

범주	2022년	2023년	2024년
디스플레이	-	5	6
미래형이동수단	-	5	5
바이오의약품	-	8	8
반도체	20	22	22
백신	7	7	7
수소	-	6	9
이차전지	9	9	9
총합	36	62	66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각 연도 참고해서 저자 작성

표 9 국가전략기술 신규도입 기술 수 추이

구분	신규도입 기술 수
디스플레이	6
총합	66

출처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각 연도 참고해서 저자 작성

요약하면, 일반적인 R&D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우대 기술(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기술의 상용화, 지원 필요성 감소 등의 이유로 우대 기술에서 제외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쟁점

다음으로 본 제도의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본 제도의 경우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일반적 경영 활동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조세 혜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적격 혁신 활동¹⁶⁾을 수행한 기업에 돌

16) 본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적격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정의

본 제도의 경우 세무행정 측면에서의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과 일반적 경영 활동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에서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조세 불확실성을 사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기업들은 세액공제 신청 전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할 것을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기술검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한다. 기술검토는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용검토는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한 경우에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사전심사제도는 세액공제 활용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조세 확실성을 증대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기업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는 수행하지 않고, 해당 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 운영 세칙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이 다음의 사항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에 관한 종합의견서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전조사 신청 건에 대해 신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원회는 해당 종합의견서를 근거로 해당 건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인정 여부 및 국가전략기술 인정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즉,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전조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기업의 납세협

력비용을 높이고, 기업들의 사전적 검증 의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및 연구개발 활동에 내재된 개념적 모호함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과세관청의 사전적, 사후적 검증 노력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 제도에 대한 과세당국 차원의 사전적 검증 비중 및 구체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으나, 제도 검증을 위한 전담 부서 등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동 제도에 대한 별도의 검증 절차는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자국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 활동 장려를 위한 본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도 개선 방향

민간의 혁신 활동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또한 기업 혁신활동은 많은 경우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므로 이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큰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로서 그동안 민간의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⁷⁾ 특히, 최근 해외의 주요국에서 자국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및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 활동 장려를 위한 본 제도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혁신 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질적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조세지출제도는 정부 세입의 손실을 의미하므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정부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제도는 R&D 관련 조세지출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제도임을 고려할 때 제도의 효율적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에도 민간 혁신활동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관점에서 두 가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7) 김빛마로·신상화·이동규·홍용기(2024)는 본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지출 및 기업 성과 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실증분석 관련 상세한 내용은 동 보고서의 제V장을 참고

정부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수의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첨단성이 높지 않은 기술,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우대 기술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우대 기술 범위의 비대화 방지 및 기술 범주 단순화

우리나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은 최근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조세지출액 증가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의 조세지출액 확대는 우대 기술 숫자의 지속적 증가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성장·원천기술은 2017년 도입 이후 2022년에만 기술 숫자가 감소하고, 나머지 연도에는 모두 기술 숫자가 유지되거나 증가하였다. 특히, 유일하게 기술 숫자가 감소한 2022년의 경우에도 신성장·원천기술의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되어 사실상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2017~2024년 기간 대상 기술의 범주는 11개에서 14개로, 분야는 37개에서 53개로, 세부 기술은 157개에서 270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역시 2022년 36개 기술로 도입되었으나 2024년에는 66개로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기술 숫자가 증가하였다.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¹⁸⁾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대 기술로 새롭게 편입되는 기술은 많지만 우대 기술에서 제외되는 기술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가 미래 관점에서 특별히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에 더 높은 수준으로 특별히 지원한다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민간 R&D 지출의 지속적 확대 추세, R&D에 대한 정부 지원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향후 예상되는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우대 기술 선정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수의 기술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이미 상용화되었거나 첨단성이 높지 않은 기술,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우대 기술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분야의 R&D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은

18) 특정 기술 및 분야에 대한 우대 지원 자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김빛마로·윤성주·윤성만(2021)의 p. 89~90을 참고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분야만 포함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본 제도의 구조상 우대 공제율 적용을 희망하는 민간 부문의 건의가 지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국가 미래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 현 체계를 일반 및 첨단(가칭) 분야의 두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다양한 민간 분야 기술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게 기술을 분류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3단계 차등 구조는 혁신활동을 위한 민간의 자원투자 결정에 기술 간 분야 간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정부의 행정비용 및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모두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기술을 3단계로 구분하여 혜택 수준을 차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⁹⁾ 다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신규 공제제도가 비교적 최근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가전략기술 우대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 국세청에 의한 검증 강화 등 세무 행정의 개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타 기업 대상 조세지원에 비해 제도가 오남용될 여지가 큰 제도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간 혁신활동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개념이라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성적 판단 및 검증이 요구된다. 반면, 고용, 투자 등과 관련된 조세 지원의 경우 서류나 자료를 통해 기업이 적격 지출을 했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무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먼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 건에 대한 사전적 검증 비중을 높

19) 김빛마로·신상화·이동규·홍용기(2024)의 제3장 참조

과세당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검증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 필요가 있다. 본 제도에 대한 과세당국 차원의 사전적 검증 비중이 대외에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2023년 기준 4만 3천건이 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가 있었으나 국세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된 인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⁰⁾ 본 제도의 수혜기업 수와 국세청의 관련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학수 외(2017)는 캐나다의 R&D 조세지원제도 운영을 모범 사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연구개발 활동 검증을 위해 다수의 전문 인력을 연구개발 조세지원 신청서 검토에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조사관(research and technology advisor)의 경우 연구개발 조세지원 신청서 검토 업무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²¹⁾

또한 사후적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특정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검증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가용한 인력 및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증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빅 데이터 분석 기법, AI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도 오남용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본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도 검증 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또한 또 다른 행정비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확충 규모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도 검증이 비용-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적절한 인력 배치 및 조직 구성 등 국세청 자체적인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 강화 노력과 함께, 제도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인력개발 개념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20) 국세청 홈페이지(접속일: 2024. 12. 16.) 기준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4팀(10명 내외)과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의 인력 일부가 R&D 사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 이 밖에 통상적인 법인세 신고 관련 인력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검증 업무도 함께 수행할 것으로 추정

21) 2019년 기준, 캐나다의 R&D 세액공제 전담 재무조사관(financial reviewer) 및 기술조사관 숫자는 약 500명인 것으로 파악

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해당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 신청 시 R&D 개념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읽고 인지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세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분장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심사 제도 업무에 대해서도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전심사 기술검토 절차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기업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사전심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납세협력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사전심사 업무를
일원화하는
제도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납세협력비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23.
-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2024. 6. 26.
- _____, 「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 1. 2.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 _____,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4. 12. 10.
- 김빛마로·신상화·이동규·홍용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일반(「조특법」 제10조)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김빛마로·윤성주·윤성만,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심층평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김학수,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2018년 12월호 제270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안수용·조용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질적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연구-삼극특허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연구, v.30 no.3, 2022, pp. 35~64.
-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세청(<https://www.nts.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s://ecos.bok.or.kr/#/>)
- OECD, "Measuring Tax Support for R&D and Innovation"(<http://www.oecd.org/sti/rd-tax-stats.htm>)

정책토론포럼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요

- 주 제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Consolidated Financial Information of Public Sector Entities in Korea)
- 일 시 2024년 11월 7일 (목), 14:00 ~ 17:00
- 장 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참석자 195명(현장 61명, 온라인 134명)
- 국제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회계·재정 분야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프로그램

14:00 ~ 14:25 **개회식**

개회사 **이 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김완희** |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Andrew Blazey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14:25 ~ 14:50 **기조연설**

통합 재정 보고 원칙

Guohua Huang |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14:50 ~ 15:50 **주제발표**

발표1.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

박성진 |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2. 지방정부의 재정 통계 통합

박정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

발표3.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

남상욱 |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

15:50 ~ 16:00 **휴식**

16:00 ~ 17:00 **종합토론**

좌장 **김봉환**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토론 **Dmitri Gourfinkel** | World Bank 선임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

김태동 | 차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oss Smith |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프로그램 및 실무 국장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4년 11월 7일 (목)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의 주제 아래, 한국의 통합결산서 도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음
- 지난 2020년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의 발생주의 회계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공재정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됨
- 저출생, 고령화, 소득 및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소요 증가로 재정 지속가능성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심포지엄의 주제를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로 선정하고, 국가 재정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 마련 방안을 논의하였음

- 기조연설 및 주제발표에서는 정부재정통계(GFS) 작성 범위 및 절차 등 통합 재정 보고 원칙과 한국 공공부문의 재무보고 및 재정통계 현황, 통합결산서 도입 이점 및 활용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통합결산서 도입 시,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한국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결산서의 범위와 통합 방식에 대하여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공공부문 단위의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논의되었으며, 발생주의 회계 정보의 거시경제적 측면의 활용 증진이 필요함이 강조되었음
- 재정 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된 발생주의 회계 정보는 미래 재정 부담 세대 및 재정 운영의 거시경제적 적합성 등 재정과 거시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생산과 활용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 통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정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정보의 이점에 대한 사례 제시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Opening Session

Opening Remarks

이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생, 고령화, 소득불균형, 지역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재정소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재정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통합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 현재와 미래의 정부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재정정보가 필요함을 강조함
-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는 국가 재정 전반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국가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며,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됨
- ◆ 오늘 심포지엄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통합재정정보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학술적 및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Congratulatory Remarks 1.

김완희 |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

- ◆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학회장은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하며, 공공부문 통합결산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합재정정보가 각국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유지와 균형재정을 목표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COVID-19과 저출생·고령화와 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작성, 부채 통합 관리, 중장기 재정 전망 수립 및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음
- ◆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기준 업데이트를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도출되고, 한국의 재정 관리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재정관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Congratulatory Remarks 2.

Andrew Blazey | Deputy Head of Public Management and Budgeting (OECD)

- ◆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은 심포지엄의 주제인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가 장기적인 재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언급하며, 이와 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OECD 예산 담당자들의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함

- 기후위기와 고령화와 같은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OECD 예산 담당자들은 △예산 제도의 질, △국민의 재정 문해력 증진, △전략적 예산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있음
- 예산 제도의 질은 단순히 예산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예산 체계 구성 요소의 수준을 의미하고, 기후변화와 고령화와 같은 재정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재정 문해력 증진이 중요하며, 모든 부처와 기관에 걸쳐 정부가 우선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한 예산 조정과 이를 위한 리더십 역할이 필요함

◆ 공공부문 재무보고에서도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공재정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해야 함

Keynote Speech

Principles of Consolidation in Fiscal Reporting

Guohua Huang | Senior Economist (IMF)

- ◆ Guohua Huang IMF 재정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통합 재정 보고 원칙'을 주제로, 거시경제통계의 통합시스템의 일부인 정부재정통계(GFS)의 통합 범위와 통합 절차 및 2014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 2014)의 개정 계획에 대해 공유함
- 정부재정통계(GFS)는 지배성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그 하위 부문을 통합함
- 공공부문은 거주 정부단위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거주 기관 단위로, 시장성 여부에 따라,

△일반정부(중앙·지방) 단위와 △거주 공기업(금융·비금융) 단위로 구성되고, GFS의 작성 범위는 시장성이 없는 일반정부 단위임

- GFS 작성 절차는 △보고실체별 재무제표 등 원천 자료 수집, △회계 제도, 보고일 및 방법론적 차이에 대한 조정, △자료 통합으로 구성되며, 작성 과정 전반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점검해야 하며, 통합 시에는 재정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 함
- 회계제도와 통계지침 간의 개념일치를 이루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민계정체계(SNA)와 수지 및 국제투자지침(BPM) 등 다른 통계 매뉴얼과의 개념 일치와 사용자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 GFSM 2014 개정 작업이 착수되었으며, 2027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임
- 개정 작업은 △(2024년 3분기) 최종 프로젝트 결정, △(2025년 1분기) 매뉴얼 구조 결정 및 초안 작성, △(2026년) 논의안 초안 작성 및 제언사항 도출, △(2027년) 매뉴얼 최종 초안 작성 순으로 진행 예정
- 신규 연구 과제로 △GFS 작성 이슈, △부채 및 재무 주제, △환경 주제,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을 선정하였으며, 관심 있는 기관의 협업을 요청함

Presentation Session

Presentation 1.

Consolidated Government Accounts in Korea

박성진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 ◆ 박성진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공공부

문 재무보고 현황, 통합결산정보의 이점, 주요국의 통합결산정보 작성 사례 및 한국 도입에 대한 함의를 논의함

- 한국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부문별로 상이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하므로, 한국 공공부문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통합결산정보는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재정상태표를 의미하며, 국가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므로, 정책 입안자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재정 통제 및 감독 강화에 기여하며, 정부재정에 대한 공공 신뢰를 증진함
- 다양한 정부 단위가 상이한 회계 기준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통합 시 데이터 수집 및 통합 과정이 복잡해지며, 회계정책과 관행의 개념 일치가 필요하며, 통합을 위한 역량과 기술이 요구됨
- 주요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통합결산정보는 국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별로 접근 방식과 통합 범위는 상이하며, 상대적으로 정부 규모가 작은 뉴질랜드만이 이를 공공부문의 재정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 통합 범위를 살펴보면, 영국은 공공부문 전체를 포함하는 반면, 뉴질랜드는 단일국가로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와 정부 소유 기관 및 국영기업을 포함
 - 호주는 연방정부(일반정부-공공기관) 차원에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며,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스웨덴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통합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향후 한국에 통합결산서 도입 시, 통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

며, 한국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결산서의 범위와 통합 방식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

Presentation 2.

Consolidation of Financial Statistics in Korean Local Government

박정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

- ◆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장은 '한국 지방정부의 재정통계 통합'을 주제로, 한국의 지방 공공기관의 포함 범위, 지방정부 부문의 통계 및 통합 절차,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함
- 한국의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부문 통계에는 △정부재정통계 목적의 GFS 2001과 공공부문부채통계(PSDS), △재정 분석 목적의, 지역통합재정통계와 통합부채 통계가 있으며, 각 통계별로 포함 범위와 정보는 상이함
 -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되며,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정보를 포함
 - GFS 2001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로 구성되며, 재정상태, 재정운영 및 현금흐름 정보를 포함
 - PSDS의 작성 범위는 GFS와 동일하게 지방정부와 지방공사로 구성되며, 재정상태 정보만 포함
 - 통합부채의 작성 범위는 지방정부,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며, 재정상태와 우발부채 정보를 포함
- 통계자료 작성과 통합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GFS 2001, PSDS 및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기관별 통계 작성, △하위 자치단체 수준 통

합(지역통합재정통계), △상위 자치단체 수준 통합, △지방정부 전체 수준 통합 절차로 진행되며, 통합 부채는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자료에 우발부채를 추가하여 작성함

- 향후 개선 과제로 △통계별 기관 범위의 일원화, △통계별 정보 일원화를 통한 통계 통합, △현금흐름표 도입 및 △오류 식별 및 데이터 자동화 등 e호조+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함

Presentation 3.

dBrain+ from the Accrual Accounting Perspective

남상욱 |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

- ◆ 남상욱 한국재정정보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은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를 주제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디브레인+ 시스템의 소개, 시스템 개선사항,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함
- 디브레인+ 시스템은 중앙정부의 재정 관리를 지원하는 재정정보시스템으로, 2022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며, 5개년 중기재정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집행, 회계 결산 및 성과평가까지의 정부의 재정 관리 업무를 지원하며, 기관 간 재정정보 연계, 재정 분석 및 재정 정보 제공 시스템을 보유함
- 디브레인+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정부재정통계 산출과 결산보고서 작성이 있으며, 현금 기반의 예산 결산과 발생주의 기반의 회계 결산을 지원함
- 특히, 회계결산의 경우, 복잡한 회계처리를 간소화하는 결산 모듈을 통해 분개, 마감, 조정, 내부거래 제거, 원가계산 등이 자동화되어 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함

- 디브레인+ 시스템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결산 업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데이터 일관성 점검, △사용자 편의성 개선, △기능 검증 강화 등이 있음
-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향후 과제로는 일반 국민이 국가회계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표의 핵심 정보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가 포함될 예정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개선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함

Discussion Session

Discussion 1.

Dmitri Gourfinkel

| Senior Governance Specialist (World Bank)

- ◆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및 공공기업 등 다양한 공공부문 단위의 통합재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10가지 단계에 대해 논의함
- △(1단계) 통합재정정보의 범위 설정, △(2단계) 회계 계정 과목과 통계 체계의 개념 일치를 통한 하나의 동일한 계정과목(CoA) 마련, △(3단계) 기관 간 동일한 회계 정책 적용, △(4단계) 회계연도의 마감 및 보고 일자 동일하게 설정, △(5단계) 통합재정관리시스템(iFMS) 개발 및 활용, △(6단계) 각 보고실체들의 데이터 수집, △(7단계) 수집한 데이터의 일관성 확인, △(8단계)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등 주요 항목의 통합과 집계 및 내부거래 제거 등 통합에 대한 조정, △(9단계) 산출 결과 검

증, △(10단계) 공공부문, 일반정부 및 그 하위 부문에 대한 통합재무제표 작성

적이고 실용적인 통합재정정보의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설립을 검토 필요

Discussion 2.

김태동 | 차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 ◆ 발생주의 도입은 재정관리의 목적에서 출발하였고, 발생주의 정보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므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통한 재정의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함
- 회계정보의 중요성은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명제에서도 확인되듯이, 재정과 회계정보의 통합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 발생주의 회계정보는 재정과 거시경제적인 측면의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어느 세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가, 현재 재정운영이 거시경제 상황에 적합한가, 재정운용 목적이 현재와 미래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 등의 거시경제적 담론들을 함께 고민해야 함
- 특히, 예산결산 과정에서 발생주의 재정정보가 현금주의 예산회계에 적절히 환류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보이고, 정책 집행자와 수립자가 발생주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 ◆ 회계정보와 재정통계를 통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고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Discussion 3.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회계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 회계정보를 접근하는 방식과 이해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함
- 회계정보의 공급자인 회계 관련자와 수요자인 재정경제관련자 간 정보의 접근방식과 이해도의 격차가 존재함
- 특히,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공급자는 정보의 활용을 잘 고민하지 못하고, 회계정보를 사용하는 수요자는 생산과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 정보사용과 활용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격차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회계정보의 통합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함
- 통합재정 및 회계의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며, 정보의 생산 및 산출단계에서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참여 필요
- 재정정보 통합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통합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는가를 제시할 필요성 존재
- 정부의 자료 생산주체가 다른 경우 분석결과가 다른 방향성을 보이기도 하므로, 통합정보의 구축 및 활용 시 통합정보를 통한 결과의 합리성을 점

검할 필요성이 있음

- 통합된 자료도 필요하지만, 정부 내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다른 데이터 간의 분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시되어 통계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IPSASB 연례회의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무정보 통합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Discussion 4.

Ross Smith | Program and Technical Director (IPSASB)

- ◆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IPSAS 35의 내용을 소개하여, 지배(control) 기준을 기반으로 기타 보고 실체에 대한 이해관계의 회계처리 방안을 설명함
- IPSAS 35는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관 간의 연결 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경제실체는 지배하는 전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보고해야 하며, 경제실체 내 여러 보고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통합재무제표를 작성함
- 통합은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 흐름과 같은 주요 항목 간의 결합과 △종속 기관에 대한 투자 제거, 경제 실체 내의 기관들 간 잔액 및 거래 제거 등의 조정 절차로 구성됨
- ◆ IPSAS 35는 공공부문 회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직의 전체적인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국가도 있고, 적용하지 못한 국가도 있음
- 영국과 뉴질랜드가 IPSAS 35를 참조하여 통합결산서를 도입했으며, 영국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대출 이자 및 우발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
- ◆ 재무정보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면 정확한 정보가 공

동향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세정연구팀〉



미국

에너지 세액공제 최종 규정 발표

- ◆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4년 12월 4일, 에너지 세액공제(Energy Credit/Section 4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¹⁾의 적용에 대한 최종 규정(final rules)²⁾을 발표함^{3), 4)}
- 에너지 세액공제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의해 2025년까지 연장됨
- 최종 규정은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이 2023년 11월에 발표한 제안 규정(proposed rules)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제출된 350여 개의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 세액공제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⁵⁾
 - 에너지 세액공제 대상에 태양광 에너지 설비, 지열 에너지 설비, 해상풍력발전 설비(해저케이블 포함), 연료 전지 관련 설비, 바이오가스 설비, 에너지 저장 시설 등이 포함되는 등 이전보다 범위가 넓어짐
 - 기본적인 세액공제액은 에너지 생산 및 저장 설비의 종류에 따라 투자액의 6% 또는 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친환경 에너지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등과 같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규정에 따라 증가함
 -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과 설비는 종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또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을 시작해야 함
-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윌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은 전기·가스 수도 요금을 줄이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임

1) 에너지 세액공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1962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2) 최종 규정은 시행령과 같으며 법적 효력이 있음

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Releases Final Rules on Investment Tax Credit to Produce Clean Power, Strengthen Clean Energy Economy," 2024. 12. 4.,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2736>, 검색일자: 2024. 12. 13.

4) IBFD, "Treasury Finalizes Proposed IRA-Focused Green Energy Credit Guidelines," 2024.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12-05_us_5, 검색일자: 2024. 12. 13.

5) Federal Register, "Definition of Energy Property and Rules Applicable to the Energy Credit," 2024. 12. 12.,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12/12/2024-28190/definition-of-energy-property-and-rules-applicable-to-the-energy-credit>, 검색일자: 2024. 12. 13.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정 초안 발표

- ◆ 캐나다 정부는 2024년 11월 4일, 「석유 및 가스 부문 온실가스 배출 상한 규정(the Oil and Gas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p Regulations)」 초안을 발표함^{6),7)}
 - 배분된 허용량 외에도 배출권이 필요한 경우,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획득한 상쇄(offset) 크레딧, 다른 운영자에게 구입한 배출권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동 규정은 상류(upstream) 석유 및 가스 시설과 LNG 시설의 운영자에게 적용됨
 - 대규모 배출자는 2027년부터, 소규모 배출자는 2029년부터 적용됨
- (등록) 적용 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금지됨
- (배출 허용량) 매년 비례 배분함
 - 규정에 명시된 배분율과 각 시설의 3년 평균 생산 이력에 따라 배분됨
- (보고의무) 각 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연례보고서」와 누적 생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누적생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례보고서」는 공인된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제출자는 제출 후 5년 이내에 오류나 누락에 대해 수정할 책임이 있음
- 초안에 대한 협의는 2024년 11월 9일부터 2025년 1월 8일까지 진행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은 2025년에 발표될 예정임



영국

필라2 추가세액 납부에 대한 지침 발간

- ◆ 영국은 2024년 11월 20일, 필라2 추가세액 납부에 대한 지침⁸⁾을 발간함⁹⁾
 - 특정 상황에서 영국 기업이 필라2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한에 대해 설명함

6) 캐나다정부, "Canada Gazette, Part I, Volume 158, Number 45: Oil and Gas Sector Greenhouse Gas Emissions Cap Regulations," 2024. 11. 9., <https://canadagazette.gc.ca/rp-pr/p1/2024/2024-11-09/html/reg1-eng.html>, 검색일자: 2024. 12. 10.

7) IBFD, "Canada Introduces Regulations to Limit Greenhouse Gas Emissions," 2024. 11.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12_ca_1.html, 검색일자: 2024. 12. 10.

8) GOV.UK., "Guidance - Pay Pillar 2 top-up taxes (Domestic Top-up Tax and Multinational Top-up Tax)," 2024. 11. 20., <https://www.gov.uk/guidance/pay-pillar-2-top-up-taxes-domestic-top-up-tax-and-multinational-top-up-tax>, 검색일자: 2024. 12. 2.

9) IBFD, "United Kingdom - HMRC Issues Guidance on Payment of Pillar Two Top-Up Taxes," 2024. 11. 2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22_uk_3.html, 검색일자: 2024. 12. 2.

- 그룹이 필라2 추가세액을 보고해야 하는 첫 번째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에 종료 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 함
- 그룹이 필라2 추가세액을 보고해야 하는 첫 번째 회계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 종료 되는 경우,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후까지 납부되어야 함
- 상기 이외의 모든 경우, 2026년 6월 30일과 그룹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후 중 늦은 날까지 납부되어야 함
- 동 지침은 기업이 납부를 위해 필요한 정보, 납부 방법 및 계좌 정보 또한 설명하고 있으며 납부는 영국 파운드화(GBP)로 이루어져야 함



프랑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정보교환 관련 법령 발표

- ◆ 프랑스 정부는 2024년 12월 4일, EU 글로벌최저한세 지침(2022/2523)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이 적용되는 기업의 신고의무 및 정보교환의 내용을 담은 법령을 발표함¹⁰⁾
- 법령은 2024년 「재정법」에 의해 도입된 「조세일반법」상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및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신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
- 법령은 GloBE 규칙 관련 정보를 상대 관할국과 교환하도록 하고, 상대 관할국에 적격 소득산입규칙, 적격 소득산입보완규칙 및/또는 적격소제국 추가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함



벨기에

DAC 6 및 DAC 7 관련 개정 법안 의회 제출

- ◆ 벨기에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EU 행정협력지침과 관련하여 DAC 6 및 DAC 7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¹¹⁾
- DAC 6(2018/822)은 조세 영역 및 국경 간 계약의 자동정보교환에 관한 지침이며, DAC 7(2021/514)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

10) IBFD, "Government Publishes Filing Obligations for MNEs Subject to Minimum Taxation Rules," 2024. 12.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6_fr_2.html, 검색일자: 2024. 12. 16.

11) IBFD, "Government Submits Bill Including Changes to DA6 and DAC 7 Penalties, Introducing Data Protection Provisions," 2024. 12. 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4_be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 에 관한 지침임
- 정보 보고의무가 있는 자에게 납세자의 정보가 수집되어 벨기에 과세당국에 보고된다는 사실을 납세자 본인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를 도입함
 -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등록, 등록 취소, 서류 보관, 정보보호, 제재 규정에 대한 내용이 개정됨
 - 벨기에 또는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이 취소된 플랫폼 운영자는 보고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재등록이 허용됨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① 플랫폼 운영자가 운영 활동 종료를 과세당국에 통보한 경우, ② 플랫폼 운영 활동 종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③ 플랫폼 운영자가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플랫폼 운영자의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과세당국이 직접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임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한 서류를 36개월 동안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함
 - 「소득세법」, 「상속세법」 등에 보고의무 있는 금융기관, 중개인, 플랫폼 운영자 및 벨기에 유관 당국의 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도입될 예정임
 - 국경 간 계약 미신고, 플랫폼 운영자의 정보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기존에 의무 불이행 시 자동으로 제재가 부과되던 것을 과세당국의 재량 사항으로 개정함



독일

최저생계비 면제 관련 법안 발효

- ◆ 독일 재무부는 최저생계비 면제에 관한 법안(Gesetz zur steuerlichen Freistellung des Existenzminimums 2024)을 2024년 11월 22일 연방의회(Bundesrat)가 승인하여 2024년 12월 5일 관보에 게재 후 12월 6일 발효함¹²⁾
- 해당 법안은 최저생계비에 관한 제15차 보고서의 결과 이행을 목표로 납세자를 위한 기본 수당과 자녀 공제(Kinderfreibetrag)를 인상하며 2024년도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함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기본 수당을 현행 1만 1,604유로¹³⁾에서 1만 1,784유로¹⁴⁾로, (2) 자녀 공제를 현행 3,192유로¹⁵⁾에서 3,306유로¹⁶⁾로 2024년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12) IFBD, Bill on Exempting Minimum Subsistence Level Enters Into Force, 2024. 12. 10., https://research.ifb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0_de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13)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1,751만원

14)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1,778만원

15)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481만원

16) 2024년 12월 16일 환율 기준 약 498만원



오스트리아

필라2 CbCR 세이프하버 규정 관보 게재

- ◆ 오스트리아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für Finanzen)는 2024년 12월 5일, 필라2 CbCR 세이프하버¹⁷⁾ 규정(Verordnung des Bundesministers für Finanzen zum temporären CbCR-Safe-Harbour)을 관보에 게재함^{18), 19)}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15일에 발행된 OECD 행정지침(OECD Administrative Guidelines)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적격재무제표(qualified financial statements)와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s)에 대한 요건을 나열함^{22), 23)}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의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됨²⁴⁾
-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에 발효한 오스트리아의 「최저한세법(MinBestG)」²⁰⁾으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²¹⁾



이탈리아

동일 납세자 명의의 계좌 간 단순 외화 이전에 대한 자본 이득 과세 제외

- ◆ 이탈리아 과세 당국은 동일한 거주자에 의해 보유된 계좌 간 이루어지는 특정 외화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capital gains)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함²⁵⁾
- 이탈리아 「소득세법(TUIR)」 제67조(1)(c-ter)에 따르면, 외화의 유상 양도(매매)나 예금 또는 당좌 계좌에서의 외화 인출로 발생한 자본 이득은 특정 요건 충족 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17) 필라2 도입 초기에 다국적 기업과 행정청의 부담을 줄이고자 필라2 요건을 일시적으로 간소화시켜 적용하는 것을 뜻함

18) Bundesministerium Finanzen, <https://www.bmf.gv.at/rechtsnews/steuern-rechtsnews/neue-verordnung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19) Rechtsinformationssystem Des Bundes, 「BGBl. II Nr. 357/2024」, <https://www.ris.bka.gv.at/eli/bgbl/II/2024/357/20241205>, 검색일자: 2024. 12. 16.

20) 오스트리아의 최저한세법은 이전 4개의 회계연도 중 직전 2개의 회계연도에서 매출액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적용됨

21) Regfollower, "Austria: Pillar Two CbCR Safe Harbour Regulation enters into force," 2024. 12. 13., <https://regfollower.com/austria-pillar-two-cbcr-safe-harbour-regulation-enters-into-force/>, 검색일자: 2024. 12. 16.

22) *Id.*

23) IBFD, "Pillar Two CbCR Safe Harbour Regulation Enters into Force," 2024. 12. 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9_at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24) *Id.*

25) IBFD, "Tax Authorities Clarify Capital Gains Realized from Certain Transfers of Foreign Currency Are Not Subject to Tax," 2024. 12.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12_it_1.html, 검색일자: 2024. 12. 16.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세무 당국 지침 발표를 통해 동일 납세자 명의로 된 재무 모니터링 대상 계좌 간의 외화 이동은 환전이나 금융 상품

취득 없이 단순 계좌 간 이전일 때 투자 목적으로 이루어진 외화 인출로 보지 않음을 공고함



스페인

횡재세 연장 등 세법개정안 발표

- ◆ 스페인 정부는 2024년 10월 30일, 횡재세 연장 등 다양한 세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²⁶⁾
- (횡재세) 수수료 및 이자의 이익에 대해 1~6% (현재 4.8%) 세율로 부과함
 - 수익성이 감소되는 경우 추가 특별공제를 적용함
 - 스페인 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횡재세를, 개정을 통해 외국법인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 적용할 예정임
- (법인소득세) 통합그룹이 공제할 수 있는 자회사

결손금의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규정을 연장함

- (개인소득세) 연간 30만유로²⁷⁾를 초과하는 저축 소득에 대한 세율을 28%에서 29%로 인상함
- (연료세) 디젤에 적용되는 연료세를 리터당 0.307 유로²⁸⁾에서 0.40069유로²⁹⁾로 인상함
 - 디젤 연료에 대한 세금을 가솔린 연료와 동일하게 조정할 계획임
- (담배세) 전자담배와 베이프용 액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



핀란드

DAC 8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 개시

- ◆ 핀란드 국세청은 2024년 11월 18일, 2011년 행정협력지침(2023/2226)의 개정 지침인 DAC 8³⁰⁾의 이행에 관한 공개 협의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³¹⁾

- 이 법안은 특히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DAC 8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분야에서 DAC 8에 부합하

26) IBFD, "Government Proposes Tax Package, Extends Windfall Tax on Banks, Institutions, Abandons Extension on Energy Companies," 2024. 11.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01_es_1.html, 검색일자: 2024. 12. 10.

27)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4억 5,523만 8천원임

28)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465.86원임

29) 2024년 12월 26일 환율 기준 약 608.03원임

30) DAC 8은 암호화폐 거래 정보교환 및 보고에 관한 조세분야 행정협력지침의 개정지침 이행에 관한 법안임

31) IBFD, "Ministry of Taxation Opens Public Consultation on Implementation of DAC 8," 2024. 11.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1-26_dk_1.html, 검색일자: 2024. 12. 13.

는 기타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함

- 해당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됨
- DAC 8 및 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
계(CARF)에 규정된 암호화자산 거래와 관련된
보고 의무 및 실사 요건의 이행
- DAC 8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교환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확대
- DAC 8에 따라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의 암호화자산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

며, 이를 통해 이후 해당 정보를 EU 회원국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또한, DAC 8은 EU 회원국 간의 자동정보교환 범
위를 전자화폐에 대한 보고 및 데이터 교환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교환 및 행정협력에 관한 기존
조항의 일부를 수정함
- 제안된 조치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
며, 공개 협의 기간은 2024년 12월 13일에 종료됨



네덜란드

필라1 Amount B 채택에 따른 세금 영향 발표

-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11월 27일, 필라1에 따
른 Amount B 도입의 세금 영향에 대한 결정문(deci-
sion)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4일 관보 제38369
호(Official Gazette No. 38369)에 게재함³²⁾
- 네덜란드는 ‘적용 대상 관할국(covered jurisdic-
tions)’에 의해 적용된 범위 내에서 Amount B의
적용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확인함
- 네덜란드는 자국 법률 및 규정에 Amount B를 도
입하고, 네덜란드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관할권의
Amount B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함
을 설명함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대응조정을 통해 해당 관할
국에서 Amount B를 적절하게 적용한 결과 네덜
란드의 납세자와의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이중과
세를 제거할 것임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적용대상 관할국에서
Amount B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합의절차
(MAP)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제거할 것임
- 네덜란드 과세당국은 Amount B가 올바르게 적
용된 경우 해당 관할국에서의 정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보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것임
- 상기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32) IBFD, "Netherlands: OECD, State Secretary for Finance Clarifies Tax Implications for Adopting Amount B," 2024. 12. 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12-05_nl_1.html, 검색일자: 2024. 12. 11.



중국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 및 토지 부가세 규정 완화

- ◆ 중국 재무부(MOF), 국가세무총국(STA) 및 주택도시 농촌건설부는 2024년 11월 13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토지 부가가치세 규정을 완화할 것을 공고함³³⁾
- (취득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주택의 면적과 소재지 기준을 완화하고 면적기준을 초과한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인하함
 - (면적) 당초 90㎡ 이하의 주택에만 1%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면적 기준을 140㎡로 완화하였으며,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3%에서 1.5%로 인하함
 - (소재지) 당초 1%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대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진) 소재 주택 취득 시에도 1%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됨
- (다주택자)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며, 140㎡ 이하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됨
- (토지부가세)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 부과하는 토지 부가가치세³⁴⁾의 최소 사전 징수 세율(the minimum pre-collection rate for land VAT)을 0.5%p 인하하고, 일반주택과 고급주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기존 토지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음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법 관보 발표

- ◆ 싱가포르 정부는 2024년 11월 27일 「2024년 다국적 기업(최저한세)법(The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을 정부 공보에 게재함³⁵⁾
- 소득 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을 적용하는 '다국적 기업 추가세(multinational enterprise top-up tax, MTT)'와 '적격소재국(국내)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시행함

33) Tax Note, "China Lowers Deed Tax and VAT on Residential Purchase," William Hoke, <https://www.taxnotes.com/tax-notes-international/legislation-and-lawmaking/china-lowers-deed-tax-and-vat-residential-purchases/2024/11/18/7n59h>, 2024. 11. 18., 검색일자: 2024. 12. 10.

34) 국유토지사용권, 지상건물 및 그 부차물을 양도하고자 취득하는 가치증가액(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wii/rsrchReprtReadPage.do?CTS_SEQ=46556&AST_SEQ=56, 검색일자: 2024. 12. 31.

35) IBFD, "Singapore Gazettes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2024. 12. 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2-03_sg_1, 검색일자: 2024. 12. 16.

-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 기업에 적용됨
- GloBE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상세 규칙 및 요건

등을 명시한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추가 정보는 추후 발표할 예정임



호주

필라2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안 승인

- ◆ 호주 정부는 2024년 12월 10일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 규칙)의 틀을 구현하는 기본 법안들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필라2 관련 주요 사항들을 이행할 것임을 발표함^{36), 37)}
- 호주 정부는 필라2와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법안을 승인함
 - 「2024년 조세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axation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 「2024년 조세부과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axation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Imposition Act 2024)」
 - 「2024년 재무부 법률개정(다국적,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Treasury Laws Amendment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Consequential) Act 2024)」
- 다만 GloBE 규칙의 상세 내용 대부분은 이후 제

정될 하위 법률에 포함될 예정임

- ◆ 이번 승인된 법안들을 통해 연간 글로벌 수익이 7억 5천만유로³⁸⁾ 이상인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내 최저한세를 적용함
-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호주 거주 다국적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추가 세금을 적용할 수 있게 함
-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UTPR)'이 적용됨
- 또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의 호주 실효세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국내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타국의 글로벌 최저한세로 징수되었을 수익만큼을 징수함
-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36) Australian Taxation Office, "Implementation of a global minimum tax and a domestic minimum tax,"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in-detail/international/implementation-of-a-global-minimum-tax-and-a-domestic-minimum-tax>, 검색일자: 2024. 12. 16.

37) IBFD, "Australia Enacts Pillar Two Global Minimum Tax Legislation." 2024. 12.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12-13_au_1, 검색일자: 2024. 12. 16.

38) 2024년 12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64억원임

주요국의 재정동향

〈자료수집 및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EU

- ◆ EU 이사회,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 개별 회원국 계획의 수정안 승인(2024. 12. 10.)^{1),2)}
- (개요) 회복·복구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유럽 경제 활성화 및 녹색·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패키지인 경제회복계획(Next Generation EU(NGEU))의 핵심 프로그램
 - (규모) 보조금 3,380억유로, 차입금 3,858억유로로 총 7,238억유로 지원(현재 가치 기준)
 - (절차) 회원국들은 2021년 녹색·디지털 전환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회원국의 목표·투자 계획을 집행위에 제출하였고, 2022년 6월 집행위의 평가를 거쳐 자금 사용 승인
 - ▶ (우선순위 분야) 2021~2022년 동안 EU 회원국들은 6가지 정책 분야 내의 개혁 및 투자 목표를 담은 프로젝트 패키지를 제출(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사회·지역 결속, 건강 및 회복력(Resilience), 교육 및 기술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
 - ▶ (집행위 평가 기준) 2022년 6월 집행위는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의 국가별 권고안과의 정합성 여부, 성장 잠재력·일자리 창출·사회경제 회복력 개선, 녹색·디지털 전환에 기여 여부(지원 금액의 최소 37% 이후 및 생물다양성, 최소 20%를 디지털 전환에 할당)로 평가
 - (수정 계획) 일부 EU 회원국들은 2021년 제출된 계획서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³⁾로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조치, 행정부담 완화, RE-PowerEU(2022년 5월 신설)⁴⁾ 등을 반영
 - 이사회는 아일랜드(6월), 독일(7월), 룩셈부르크(9월), 리투아니아·포르투갈(10월), 네덜란드·체코·이탈리아(11월), 스웨덴·슬로베니아·덴마크·벨기에

1) EU 이사회, "Recovery and resilience fund: Council greenlights the amended plans of Sweden, Slovenia, Denmark and Belgium," 2024. 12. 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2/10/recovery-and-resilience-fund-council-greenlights-the-amended-plans-of-sweden-slovenia-denmark-and-belgium/>, 검색일자: 2024. 12. 12.; "Timeline - A recovery plan for Europ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covery-plan/timeline-a-recovery-plan-for-europe/>, 검색일자: 2024. 12. 12.; "A recovery plan for Europ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recovery-plan/>, 검색일자: 2024. 12. 12.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1년 4월호, 2021. 5. 6., pp. 2-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443>, 검색일자: 2024. 12. 12.;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2024. 3. 6., pp. 9-11,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12.12.; 「KIPF 재정동향」, 2024년 4월호, 2024. 5. 13., p. 4,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10>, 검색일자: 2024. 12. 12.

3) 일부 예시로 스웨덴은 화석연료 및 바이오 연료의 비용 증가로 인해 목표를 수정하거나 대체하였고, 벨기에에는 수소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기술 투자 등에 관한 목표를 수정했으며, 슬로베니아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목표를 수정하는 등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나 조치로 수정

4)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투자,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등을 목표로 하는 회복·복구기금 프로젝트

(12월) 계획의 수정을 승인

◆ EU 통계청,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4. 12. 6.)⁵⁾

- (경제성장률) 2024년 3분기 유로지역과 EU의 전분기 대비 계절조정 GDP 성장률은 각각 0.4%로 나타남(2024년 2분기에는 각각 0.2%) (<표 1> 참고)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0.9%, EU는 1.0%로 나타남
- ▶ (미국) 2024년 3분기 미국의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7%, 전년 동기 대비 2.7%
- (성장 기여도) 순수출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양(+)의 기여
 - ▶ 가계최소소비지출은 유로지역 +0.4%p, EU +0.3%p, 정부 최종지출은 유로지역 및 EU 둘 다 +0.1%p 기여를 나타내고, 총고정자본형성은 유로지역 +0.4%p, EU +0.2%p, 재고증감은 유로지역 +0.4%p, EU +0.5%p
 - ▶ 순수출은 유로지역 -0.9%p, EU -0.7%p로 두 지역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
- (회원국별) 전분기 대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아일랜드

3.5%,⁶⁾ 덴마크와 리투아니아 각각 1.2% 순으로 높았고, 헝가리 -0.7%, 라트비아 -0.2% 순으로 낮음

- (취업자 수) 2024년 3분기 전분기 대비 취업자 수는 유로지역 0.2% 증가, EU는 동일
- (전년 동기 대비) 유로지역 취업자 수는 1.0%, EU는 0.7% 증가(2분기 각각 0.9%)
- (회원국별) 2024년 3분기 전분기 대비 회원국별 고용성장률은 크로아티아 1.5%, 아일랜드 1.2%, 몰타 1.0% 순으로 높았고, 루마니아 -3.1%, 에스토니아 -1.2%, 라트비아 -0.6% 순으로 낮았음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하향 조정(2024. 12. 12.)⁷⁾

- (정책금리) 12월 18일부터 세 가지 주요 금리를 각각 0.25%p 하향 조정 예정
- 기준금리 3.4 → 3.15%, 한계대출금리 3.65 → 3.40%, 수신금리 3.25 → 3.00%로 인하⁸⁾
- (물가) 물가상승률 하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물가상승률은 2.4%, 2025년 2.1%, 2026년 1.9%로 하락한 후 EU 배출권 거래제 확

5)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6) 아일랜드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에 의한 외부 충격이나 변동성을 배제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 정부 소비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보여주는 수정 국내 수요(Modified Domestic Demand)는 전분기 대비 1.3%, 연간 기준으로는 4.1%로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아일랜드의 2024년 상반기 낮은 경제성장률은 주로 다국적기업 부문의 변동이 반영된 반면, 아일랜드 국내 경제활동을 더 잘 반영하는 수정된 국내 수요는 노동시장 강세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2024년 아일랜드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은 -0.5%)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Chambers welcomes the strong third quarter results for the domestic economy," 2024. 12.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83c4a-minister-chambers-welcomes-the-strong-third-quarter-results-for-the-domestic-economy/>, 검색일자: 2024.12.11.; EU 집행위, Economic forecast for Ireland, 2024. 11.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surveillance-eu-economies/ireland/economic-forecast-ireland_en, 검색일자: 2024. 12. 11.)

7)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4. 12. 12.,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4/html/ecb.mp241212-2acab6e51e.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8) 기준금리(Main Refinancing Operations)는 은행이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고, 한계대출금리(Marginal Lending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이며, 수신금리(Deposit Facility)는 은행이 하루 동안 유럽중앙은행에 예치 시 적용받는 금리

표 1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Q4	Q1	Q2	Q3	Q4	Q1	Q2	Q3
벨기에	0.3	0.3	0.3	0.3	0.6	0.8	0.9	1.2
독일	-0.4	0.2	-0.3	0.1	-0.2	-0.1	-0.2	-0.3
에스토니아	-0.5	-0.2	0.1	0.0	-2.3	-1.4	-1.1	-0.6
아일랜드	-1.4	0.6	-0.3	3.5	-9.9	-4.2	-3.2	2.5
그리스	0.8	0.1	1.2	0.3	2.1	2.2	2.3	2.4
스페인	0.7	0.9	0.8	0.8	2.3	2.6	3.2	3.4
프랑스	0.4	0.2	0.2	0.4	1.2	1.4	0.9	1.2
크로아티아	1.8	0.5	1.0	0.8	5.2	4.2	3.2	4.1
이탈리아	0.0	0.3	0.2	0.0	0.3	0.3	0.7	0.4
사이프러스	1.0	1.7	0.1	1.0	2.7	3.8	3.5	3.8
라트비아	-0.4	-0.1	-0.3	-0.2	1.1	0.2	0.0	-1.0
리투아니아	-0.3	1.1	0.3	1.2	0.7	2.7	1.5	2.4
룩셈부르크	0.1	0.3	0.6	0.2	-0.5	-0.7	-0.1	1.2
몰타	0.9	3.0	0.8	0.6	6.4	7.0	5.8	5.4
네덜란드	0.2	-0.3	1.1	0.8	-0.5	-0.6	0.8	1.7
오스트리아	-0.6	0.2	-0.2	-0.1	-2.4	-1.5	-1.4	-0.8
포르투갈	0.8	0.6	0.2	0.2	2.1	1.4	1.6	1.9
슬로베니아	0.8	-0.2	0.1	0.3	2.8	1.9	0.7	1.0
슬로바키아	0.5	0.7	0.2	0.3	2.2	2.7	2.1	1.7
핀란드	-0.4	0.4	0.1	0.3	-1.5	-1.2	-1.5	0.5
유로지역 20개국	0.0	0.3	0.2	0.4	0.1	0.4	0.5	0.9
불가리아	0.6	0.6	0.6	0.6	1.7	2	2.2	2.4
체코	0.3	0.4	0.2	0.4	0	0.4	0.5	1.3
덴마크	2.0	-0.7	1.3	1.2	4.8	2.2	3.5	3.9
헝가리	-0.3	0.4	-0.2	-0.7	0.6	1.6	1.3	-0.7
폴란드	0.0	0.6	1.2	-0.1	2.0	1.7	3.7	1.7
루마니아	0.1	-0.4	0.1	-0.1	2.1	2.0	0.8	-0.3
스웨덴	-0.2	0.6	0	0.3	-0.3	0.2	0.4	0.7
EU 27개국	0.1	0.3	0.2	0.4	0.3	0.6	0.8	1.0
아이슬란드	1.0	-1	1.7	:	1.4	-1.0	-0.7	:
노르웨이	1.7	0.3	1.4	:	1.0	1.0	2.6	:
스위스	0.3	0.3	0.6	0.4	0.5	0.6	1.4	1.7
미국	0.8	0.4	0.7	0.7	3.2	2.9	3.0	2.7

-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3. 아이슬란드는 달력효과가 조정되지 않음

출처 EU 통계청, "GDP up by 0.4% and employment up by 0.2% in the euro area," 2024. 12. 6.,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6122024-ap>, 검색일자: 2024. 12. 10.

- 대⁹⁾ 운영으로 2027년에는 2.1% 전망¹⁰⁾
-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024년 2.9%, 2025년 2.3%,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1.9%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지만 이전 물가 급등으로 인한 임금-가격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과거 금리 인상이 금융 환경에 긴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경제) 지난 9월 전망¹¹⁾에 비해 느린 경제 회복이 예상되고 2024년 0.7%, 2025년 1.1%, 2026년 1.4%, 2027년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실질 소득의 증가가 경제 회복을 이끌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면서 대내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2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9월	11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1월	6월	9월	10월	12월	
기준금리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4.50	4.25	3.65	3.4	3.15	
한계대출금리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4.75	4.50	3.90	3.65	3.40	
기준금리 및 한계대출금리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6	-0.25	-0.25	
수신금리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4.00	3.75	3.50	3.25	3.00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	-0.25	-0.25	-0.25	-0.25	

출처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4. 12. 16.

9) EU 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ETS) 200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전기 및 열 생산, 산업 제조, 항공 세 부문을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등의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배출에 대한 비용을 오염자에게 부과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며, EU 회원국 및 유럽 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북아일랜드(전력)에 적용됨.

(ETS2) 기존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건물, 도로 운송과 같은 소규모 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규제. 2025년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의 단계적 실행을 시작으로 2027년에 완전히 실행될 예정이며 건물 개조와 운송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TS2 배출량 상한은 2005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42% 줄여야함. 2026년에 가스나 석유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경우 ETS2의 시행이 2028년으로 연기될 수 있음.

(EU 집행위, "What is the EU ETS?,"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what-eu-ets_en, 검색일자: 2024. 12. 19. _____, ETS2: buildings, road transport and additional sectors, https://climate.ec.europa.eu/eu-action/eu-emissions-trading-system-eu-ets/ets2-buildings-road-transport-and-additional-sectors_en, 검색일자: 2024. 12. 19.)

10) EU 배출권 거래제가 운송업으로 확대된 ETS2가 2027년 완전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해운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로 선박 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제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 국가별, 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증가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으며(Moessner, R., "Effects of Carbon Pricing on Inflation," CESifo Working Paper No. 9563. Munich: CESifo. 2022, https://www.cesifo.org/DocDL/cesifo1_wp9563.pdf, 검색일자: 2024. 12. 19.), 다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로 에너지가격은 상승하나 전체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본 연구가 있음(Konradt, M., McGregor, T., Toscani, F. G., "Carbon Prices and Inflation in the Euro Area," IMF Working Papers, Vol. 2024, Issue 031, IMF(국제통화기금), 2024, 41쪽. DOI: <https://doi.org/10.5089/9798400267277.001>, 검색일자: 2024. 12. 19.)

11) 2024년 경제성장률은 0.8%, 2025년 1.3%, 2026년 1.5%로 경제 성장 전망



OECD

◆ OECD, *Pensions Outlook 2024* 발표(2024. 12. 2.)^{12), 13)}

● (개요) 『2024년 OECD 연금전망 보고서』는 자산 기반 연금(asset-backed pension)¹⁴⁾ 시스템이 공적 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다층적 연금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및 권고사항을 제안

- OECD 국가의 연금 자산은 56조달러(2023년 기준)¹⁵⁾ 규모로 지난 20년간 선진국 경제의 평균 연금 자산이 GDP 대비 55%로 약 두 배 증가했고, 8개 국가*에서는 GDP 대비 10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룸

*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등

▶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산기반 연금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 자산기반 연금이 퇴직 후 재정 안정성(financial security)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음

● (정책권고) 연금 포괄성을 강화하고, 투자전략을 다변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개발 등을 활용해 은퇴 계획을 개선할 것을 권고

- (포괄성 확대) 다중 고용주 연금 제도(Multi-employer pension scheme)는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자영업자와 같이 기존 연금 제도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포괄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사단체가 특정 산업 또는 부문에서 집단협약을 맺어 대표 모델(Representative Model)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모델은 모든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포함할 수 있어 두 가지 모델을 혼합하여 도입하는 것을 권장

* (대표모델 예시) 호주의 산업연금기금(Industry superannuation funds), 벨기에의 섹터연금(Sectoral Pensions), 덴마크 및 스웨덴의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 등

* (금융기관 모델 예시) 영국의 마스터신탁(Master Trust), 호주의 소매형 펀드(Retail superannuation funds), 뉴질랜드의 Kivisaver 등

- (투자전략 다변화) 은퇴 시점에 따라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생애주기 투자전략이 권장되며, 확정기여(DC) 연금의 지급 단계 설계는 평생 소득 제공을 보장하는 한편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 확정기여(DC) 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8개국 중 13개국에서는 전체 투자금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7개국에서만 20% 미만으로 나타남

- (재정 인센티브) 대다수 국가에서 세금 규정이 복잡하고 중·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어, 세계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비세제 인센티브(예: 매칭

12) OECD, *OECD Pensions Outlook 2024*, 2024.12.2.,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pensions-outlook-2024_51510909-en.html, 검색일자: 2024. 12. 5.

13) OECD 연금 전망 보고서는 2년마다 발간되며, OECD 국가의 공적 및 사적 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을 분석함

14)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연금제도로, 공적 연금 시스템과 함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15) 2001년에 약 15.3조 규모에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세계 상장주식 시가총액(global public equity market capitalisation)의 1/5 비중을 차지함

기부금, 보조금 등)도 활용하여 모든 소득 계층에게 은퇴를 위한 저축을 장려해야 함

- (커뮤니케이션 도구) 퇴직자들이 은퇴를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도구와 교육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개인연금 대시보드를 통해 연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은퇴 소득 예측을 지원할 수 있음

◆ OECD,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Resilience in uncertain times” 발표(2024. 12. 4.)^{16), 17)}

- (동향) 세계 경제는 국가와 부문에 따른 활동 강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점차 완화되고 세계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함
 - 감소된 물가상승률이 실질 가계소득 성장 및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신뢰지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압력(pressure)*은 계속 완화되고 있음
 - * 노동 부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인 '구직 공고 대비 실업자 수 비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감소
 - 실질금리는 여전히 제한적(restrictive)인 수준이지만, 낮아진 명목금리로 인해 주택 및 신용시장에서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국가(선진국의 절반과 신흥국 경제의 약 60%)에서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완화되어 중앙은행 목표치로 복귀함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4년에 3.2%, 2025년 및 2026년은 3.3%로 전망되며, 2026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브라질의 견고한 성장세가 둔화되고 유럽이 회복 속도를 내면서 국가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내수 수요와 중국 및 일본에서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이 아시아의 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OECD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5.4%에서 2025년 3.8%, 2026년 3.0%로 더욱 완화될 것이며, 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여전히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함
 - (위험) 높아진 지정학적 긴장과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요인이 존재
 - 중동 갈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 시장과 공급망이 교란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상승은 전 세계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최근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면서 주요 경제국이 시행하는 수입제한 조치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킴
 - 예상치 못한 성장 둔화나 점진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서의 이탈은 금융시장 혼란과 신흥시장 경제의 자본흐름 및 환율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높은 채무 수준, 자산의 과대평가, 일부 차입자(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의 신용 악화 등으로 인한 금

16)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2024. 12. 4.,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oecd-economic-outlook-volume-2024-issue-2_d8814e8b-en.html 검색일자: 2024. 12. 5.

17)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융 취약성도 여전히 존재
- 비은행 금융기관의 규모와 상호연결성이 커지면서, 시장 부문 간 충격이 빠르게 전이될 위험이 증가함
- (정책권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경로를 확립하여 채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야심찬 개혁 노력이 필요
-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지속하되, 금리 인하의 시기와 정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근본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억제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

- 하여 결정해야 함
- (재정정책)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며, 대규모 지출 압력을 충족할 자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재정조치가 필수적임
- (구조개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화된 잠재생산을 회복하기 위해 교육과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노동 및 상품시장에서 투자와 노동이동의 제약 줄이는 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신기술 확산, 노동력 참여를 촉진

표 3 EU 정책금리 변화 경로

(단위: %)

구분	2013~2019년 평균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4년	2025년	2026년
						Q4	Q4	Q4
실질GDP성장률								
세계	3.4	3.2	3.2	3.3	3.3	3.3	3.3	3.2
G20	3.5	3.6	3.3	3.3	3.2	3.3	3.2	3.1
OECD	2.3	1.8	1.7	1.9	1.9	1.8	2.0	1.8
미국	2.5	2.9	2.8	2.4	2.1	2.5	2.2	2.0
유로존	1.9	0.5	0.8	1.3	1.5	1.1	1.4	1.5
일본	0.8	1.7	-0.3	1.5	0.6	0.6	1.3	0.3
한국 ⁴⁾	0.9	1.4	2.3	2.1	2.1	3.6	2.2	2.1
비 OECD	4.4	4.4	4.4	4.4	4.3	4.5	4.3	4.3
중국	6.8	5.2	4.9	4.7	4.4	4.7	4.6	4.3
인도 ¹⁾	6.8	8.2	6.8	6.9	6.8			
브라질	-0.4	2.9	3.2	2.3	1.9			
OECD 실업률	6.5	4.8	4.9	4.9	4.8	4.9	4.9	4.8
물가상승률								
G20	3.0	6.1	5.4	3.5	2.9	4.4	3.1	2.8
OECD	1.7	7.1	5.4	3.8	3.0	4.7	3.3	2.7
미국	1.3	3.8	2.5	2.1	2.0	2.5	2.1	2.0
유로존 ²⁾	0.9	5.4	2.4	2.1	2.0	2.3	2.0	2.0
일본 ³⁾	0.9	3.3	2.6	1.9	2.1	2.3	1.7	2.1
한국 ⁴⁾	1.2	3.6	2.3	1.8	2.0	1.5	2.0	2.0
OECD 재정수지 ⁵⁾	-3.1	-4.8	-4.8	-4.6	-4.4			
세계무역성장률	3.4	1.0	3.5	3.6	3.5	4.1	3.4	3.5

- 주 1) 회계연도 4월 1일 ~ 이듬해 3월 31일
- 2) 조화 소비자 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 3)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 4) OECD Data Explorer, Economic Outlook 116 data 사용하여 계산
- 5) GDP 대비 비중

- 출처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Table 1.1., p. 14
- 2. _____, "OECD Economic Outlook," No. 116, 검색일자 2024. 12. 6.



미국

예산·결산 등

- ◆ 미 의회, 2025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 및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등이 포함된 American Relief Act, 2025(H.R. 10545) 법안 최종 확정(2024. 12. 21.)¹⁸⁾
- (배경) 2024회계연도의 만료일(2023. 9. 30.)까지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에 대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지 않아, 2024년 12월 20일까지 유효한 임시 세출예산¹⁹⁾으로 정부 운영
- (입법 과정)²⁰⁾ 2025회계연도 1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 시한(2024. 12. 20.)이 다가오자, 의회는 3차례 시도 끝에 2차 임시 세출예산(유효시한: 2025. 3. 14.) 통과 의결
 - (3차: H.R. 10545) 임시 세출예산 및 재난재해 대응 추경 세출예산 포함, 채무한도 증액 조항은 제외된 최종안(2차 시도 법안과 유사)²¹⁾ 확정
 - ▶ Farm Bill(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의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면서 2024년 9월

30일까지 발효된 상태와 같은 효력으로 인정 및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²²⁾

기타

-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5~2034년 기간 「적자감축을 위한 정책 대안(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보고서 발표(2024. 12. 12.)²³⁾
 - * 정책 대안 분석은 적자감축을 목적으로 조세 및 재정지출 관련 정책 대안²⁴⁾을 논하는 보고서로, 의회 예산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및 정책 입안 지원의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발간됨
- 전망 기간(2025~2034년) 적자감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종합하여, 총 76개의 정책 대안에 대해 정책별 주요 특이사항을 제시하고 기여 가능한 감축 수준을 추정
 - 정책 대안으로 ①의무지출 대안 27개, ②재량지출 대안 17개, ③조세수입 대안 32개로 구분하여 제시
 - 유형별로 적자감축 규모가 큰 상위 3개의 대안을 <표 4>로 정리

18)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10545," 2024. 12. 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12/21/press-release-bill-signed-h-r-10545/>, 검색일자: 2024. 12. 23.

19) H.R. 9747; P.L. 118-83

20) The Hill, "Republicans regroup to find a funding bill 'plan C,'" 2024. 12. 19., <https://thehill.com/homenews/house/5047944-live-updates-government-shutdown-johnson-trump-musk/>, 검색일자: 2024. 12. 20.

21) Barrons, "House Passes Funding Bill With Just Hours Left to Avert a Government Shutdown," 2024. 12. 20., <https://www.barrons.com/articles/shutdown-congress-deal-debt-ceiling-68df3a93>, 검색일자: 2024. 12. 23.

22) 해당 법이 2024년 9월 30일 이후 연장이 중단되었으나, 만료된 시점 이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임

23) CBO,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2024. 12. 12.,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12/60557-budget-options.pdf>, 검색일자: 2024. 12. 16.

24) 제시된 대안은 의회 실무진, 정부부처 및 기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제시된 사안이며 의회 예산처의 자체적인 정책 권고가 아님

표 4 항목별 재정수지 개선 효과 상위 3개 대안

(단위: 십억달러)

유형	구분	최대 감축 규모
의무지출	메디케어 어드벤처 플랜의 건강 수준(health risk) 비례 수가 관련 개정	1,049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지출 상한 설정	893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주(states) 세금 면책(hold-harmless) 제한	612
재량지출	국방부 연간 예산 감축 추진	959
	비국방 예산 중 선별하여 일부 감축(교통 및 교육 분야)	339
	외교부 예산 25% 삭감	187
조세수입	세금 공제 관련 공제 범위를 제한 혹은 폐지	3,424
	연방 단위의 소비 부가세 5% 부과	3,380
	일반 재정수입 귀속 급여세 신규 부과	2,540

주 예상 감축 효과의 최대값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큰 3개의 정책 대안을 선별하여 정리

출처 의회예산처,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25 to 2034," 2024. 12. 12., Table1-1을 바탕으로 작성

◆ 트럼프 당선인, 2024 미국 대선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 (2024. 12. 17)²⁵⁾

- (배경)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2월 17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서 312표(총 538표)를 얻어 승리하면서 공식 당선인으로 확정

*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보다 86표 낮은 226표로 집계

- (최근 주요 언급 정책) BRICS-관세, 투자, 예산안 및 채무 한도 등에 대해 거론
- (BRICS 비판) 트럼프 당선인은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경제 연합체인 브릭스(BRICS)가 국제교역에서 달러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²⁶⁾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란 수출시장

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27), 28)}

- (투자 유치) 미국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는 모든 환경 규제에 한해 신속 인허가(full expedited approvals and permits) 조치 계획(2024.12.11.)²⁹⁾ - 구체적 설명은 부재
- (채무 한도 증액) 2025년에 만료 예정인 채무 한도 유예 시점을 고려하여 신정부 출범 전에 채무 한도 증액 필요성 언급³⁰⁾
- (FY2025 임시 세출예산) 민주당에서 원하는 예산 항목을 제외한 순수한(clean) 임시 세출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며, 채무한도와 결합하여 진행해야 할 것임을 언급³¹⁾

25) CBS News, "The Electoral College votes to confirm results for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today. Here's what to know," 2024. 12. 17., <https://www.cbsnews.com/news/electoral-college-vote-results-2024/>, 2024. 12. 19.

26) 현재 브릭스는 역내 통화(BRICS Currency) 활용을 늘리는 식으로 달러화 사용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브릭스 국가 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7) Reuters, "Trump warns BRICS nations against replacing US dollar," 2024. 12. 1., <https://www.reuters.com/world/trump-warns-brics-nations-against-replacing-us-dollar-2024-11-30/>, 검색일자: 2024. 12. 13.

28) BBC, "Trump threatens 100% tariff on Brics nations if they try to replace dollar," 2024. 12. 2., <https://www.bbc.com/news/articles/cgrwj0p2dd9o>, 검색일자: 2024. 12. 16.

29)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30131209113398>, 2024. 12. 11.

30)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76124870048584>, 2024. 12. 19.

31) Truthsocial,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3676468224007678>, 2024. 12. 19.

-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0.25%p 인하(2024. 12. 18.)³²⁾
-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4.50~4.75%에서 4.25~4.50%로 인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제 상황 평가 및 정책 결정을 보고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계속하여 확장됨
 - (물가) 연준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진전이 있었지만,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
 - (노동시장) 노동시장은 올해 초부터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며, 실업률은 상승하였으나 낮은 상태를 유지
 - (정책 결정)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

- 가 조정 시기와 정도를 고려 시 신규 입수 자료와 전망 변화 및 위험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³³⁾ 추가 금리인하는 물가 안정에 대한 추가 진전과 노동시장 강세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반된 정책 변화가 금번 연준의 경제 전망에 준 영향에 대해 일부 언급
 - (추가 금리 인하) 정책결정문에 금리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언급한 것은 연준이 금리의 추가 조정 속도를 완화하기에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해있다는 의미라고 밝힘
 - (정책 변화 반영)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 정책 변화의 반영에 다른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 관련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

표 5 미국 2024년 12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항목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5	2.1	1.9	1.8
- 3월 전망치	2.0	2.0	2.0	1.8
실업률	4.2	4.3	4.3	4.2
- 3월 전망치	4.4	4.4	4.2	4.2
PCE 물가상승률	2.4	2.5	2.0	2.0
- 3월 전망치	2.3	2.1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8	2.5	2.0	-
- 3월 전망치	2.6	2.2	2.0	-

-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4분기 기준 전년 대비 변화율. 실업률은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적정 통화정책 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p. 2, Table 1, 2024. 12. 18.

32)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41218a.htm>, 검색일자: 2024. 12. 19.

33)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1218.pdf>, 검색일자: 2024. 12. 19.

34)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4. 12.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abl20241218.pdf>, 검색일자: 2024. 12. 19.

- 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1에 따르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5%, PCE 물가상승률은 2.4%,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4.4%로 전망
 - 직전 경제전망(2024년 9월)과 비교하였을 때,

- 경제성장률(2.0→2.5%)과 PCE 물가상승률(2.3→2.4%)은 상향, 실업률(4.4→4.2%)은 하향 조정됨
- 정책 금리의 경우 직전 전망과 동일하게 4.4%로 전망



일본

예산·결산 등

-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2024. 11. 29.)³⁵⁾
- 2024년 11월 22일 발표된 ‘국민의 안심·안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종합 경제대책’³⁶⁾ 시행 관련 경비 추가 등을 위해 13조 9,433억엔 규모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세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한 추가 세출은 경제 대책 관계 경비 13조 9,310억엔, 기타 경비 1,768억엔,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³⁷⁾ 전출 4,259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1조 398억엔이며, 1조 6,303억

- 엔 규모의 기존 경비를 감액
- (세입) 공채금 6조 6,900억엔(건설국채 3조 800억엔, 특례국채 3조 6,100억엔)³⁸⁾을 증액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세 및 인지 수입 3조 8,270억엔, 세외수입 1조 8,668억엔 전년도 잉여금 수입 1조 5,595억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6조 5,150억엔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국채의존도³⁹⁾는 당초 예산 대비 1.8%p 증가한 33.3%

35)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 2024. 11. 29. :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20241129.html, 검색일자: 2024. 12. 2.

36) 2024년 11월 22일 발표된 정책으로, 임금·소득 증가를 위한 경제 성장, 고물가 대응, 안심·안전 확보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함(출처: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 검색일자: 2024. 12.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2024년 11월 재정동향」, pp. 38-40을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검색일자: 2024. 12. 9.)

37)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채, 차입금 등의 상환 및 이자 등 지불을 시행하는 회계 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출처: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about_mof/mof_budget/special_account/kokusaiseiri/kokusaiseiri.htm, 검색일자: 2023. 11. 15.)

38) 건설국채: 재정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공사업, 출자금 및 대출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특례국채: 건설국채를 발행해도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공공사업비 등 이외의 세출에 충당하는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하여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국채로, 세수 등 다른 세입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액을 최소로 억제해야 함(출처: 재무성 국채 관련 홈페이지(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jgbs/index.html>, 검색일자: 2024. 12. 19.)

39)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표 6 일본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	57,505	1. 세수	38,270
2. 고물가 대책	33,897	2. 세외수입 ²⁾	18,668
3. 국민 안심·안전 확보	47,909	3. 전년도잉여금 수입	15,595
소계 (경제대책 관계 경비)	139,310	4. 공채금	66,900
4. 기타 경비	1,768	1) 건설국채	30,800
5. 국제정리기금특별회계 전출	4,259	2) 특례국채	36,100
6.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¹⁾	10,398		
7. 기존 경비 감액	-16,303		
합계	139,433	합계	139,433

주 1) 1. 일본경제·지방경제의 성장에 계상된 7,926억엔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교부금의 추가 세출액은 18,324억엔

2) '시·반도체 산업기반 강화 프레임' 관련 지원금 13,054억엔을 포함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フレーム」,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a.pdf, 검색일자: 2024. 12. 2.

표 7 일본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후 2024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4회계연도 예산(당초)	2024회계연도 예산(추경 후)	증감액	증감률	
세출	일반세출	677,764	809,868	132,105	19.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6,200	18,337	10.3
	국채비	270,090	259,081	-11,009	-4.1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69,417	173,676	4,259	2.5
	이자지급비용	96,910	81,642	-15,268	-15.8
	합계	1,125,717	1,265,150	139,433	12.4
세입	조세 및 인자수입	696,080	734,350	38,270	5.5
	기타 수입	75,147	109,410	34,263	45.6
	공채금(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¹⁾	354,490	421,390	66,900	18.9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 제외)	169,417	173,676	4,259	2.5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96,910	81,642	-15,268	-15.8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기초재정수지적자)	88,163	166,072	77,909	88.4
합계	1,125,717	1,265,150	139,433	12.4	

주 1)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비용에 충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後予算フレーム」,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d.pdf, 검색일자: 2024. 12. 2.를 참고하여 작성

표 8 일본의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상세)

(단위: 억엔)

I. 일본경제 지방경제의 성장 - 전세대의 현재·미래 임금·소득 증가 -	57,505
1. 임금인상 환경 정비	9,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는 생산성 향상 지원 (297억엔) • 중소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설비투자, IT 도입 등 지원 (3,400억엔) • 중견·중소기업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공장 등 거점시설 및 대규모 설비 투자 지원 (1,400억엔) • 의료·개호·장애복지현장의 생산성 향상·직장환경 개선 등 지원 (2,304억엔) • 최근 경영상황이 급변한 의료기관 지원 (483억엔) 	등
2. 새로운 지방창생정책 전개	18,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교부금 (1,000억엔) •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성장 및 식량안보강화 (3,037억엔) • 지방 저출산대책 지원 (95억엔) • 지역 방문객 유치 촉진을 통한 인바운드 확대, 관광지·관광 산업 재생·고부가가치화 (538억엔) • 문화·기술 분야 크리에이터 지원 (190억엔) • 국립극장 재정비 (200억엔) • 지방교부세·교부금 증액 (7,926억엔) 	등
3. 국내투자 촉진	29,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컴퓨터·전자암호기술 등 (543억엔) • 후발의약품 안정공급지원 (90억엔), 신약개발 지원 (462억엔) • 우주전력기금 (3,000억엔) • Beyond 5G 연구개발 (357억엔)¹⁾ • 대형 연구 시설 개발·고도화 (248억엔) • 지역 탈탄소추진 교부금 (365억엔) • 희소금속 및 동 공급원 다각화 지원 (922억엔) • 'AI·반도체 산업기반 강화 프레임'²⁾ 관련 지원 (13,054억엔) (특별회계분 및 기존 기금을 포함하면 1.6조엔 규모) 	등
II. 고물가 대책 - 모든 국민이 성장형 경제로 이행 -	33,897
1. 최근 고물가에 대한 상세한 대응	31,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지원지방교부금(저소득층 지원금: 4,908억엔, 기타 가구 및 사업자 지원 등: 6,000억엔) • 동절기 전기·가스 요금 부담 경감 (3,194억엔) • 연료유 가격 급변 완화 대책 (10,324억엔) • '지원금·정책감세 조치(2023회계연도 경제대책)'³⁾ 관련 지원금 (6,443억엔) 	등
2.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경제사회 실현	2,4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주택 에너지 절약·재생에너지 추진 (1,809억엔) (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4,239억엔) •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도입 지원 (360억엔) (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1,860억엔) 	등
III. 국민 안심·안전 확보 - 성장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 마련 -	47,909
1.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6,6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토반도 지역 복구·부흥(생업 지원, 재해폐기물 처리 가속화 등) (2,684억엔) • 공공토지시설 등 복구 (4,628억엔) (노토반도 지역 복구·부흥분 포함) 	등
2.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 추진	19,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체제 강화(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교부금 활용) • 선상강수대·태풍 예측 정확도 향상(기상청 기능 강화) (451억엔) • 국립학교 시설 정비(체육관 공조 정비(779억엔) 포함) (2,076억엔) •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대책(공공사업관계비) (14,063억엔) 	등

표 8 의 계속

(단위: 억엔)

III. 국민 안심·안전 확보 - 성장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 마련 -	47,909
3. 외교·안전보장환경 변화 대응	1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제후 강화 (2,650억엔) • 우크라이나·주변국 지원 대응 (269억엔) • 민관(官民) 사이버보안 대책 강화 (395억엔) • 해상보안능력 강화 (912억엔)4) • 자위대 등 안전보장환경 변화에 대한 확실한 대응 등 (8,268억엔) 	등
4.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실현	7,5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체제 강화 (19억엔) • 아동·육아 지원(보육사 등 처우개선, 아동 빈곤대책 등) (2,206억엔) (특별회계분을 포함하면 3,185억엔) • 구유생보호법 관련 보상금 등 지급 (878억엔)5) 	등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추가세출	139,310 (기타 특별회계분 8,861)

- 주** 1) Beyond 5G는 2030년대에 도입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로 모든 산업과 사회활동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무선을 비롯하여 육·해·공 우주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 Beyond 5G 연구 개발 촉진 사업에서는 Beyond 5G 실현에 필요한 요소 기술의 조기 확립 등을 위해 민간 기업, 대학 등에 의한 연구 개발을 지원(출처: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s://www.soumu.go.jp/menu_seisaku/ictseisaku/B5G_sokushin/index.html#Beyond%205G%E7%A0%94%E7%A9%B6%E9%96%8B%E7%99%BA%E4%BF%83%E9%80%B2%E4%BA%8B%E6%A5%AD, 검색일자: 2024. 12. 9.)
- 2) 일본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안전보장 및 에너지 정책상의 관점에서 AI·반도체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향후 10년간 50조엔을 상회하는 국내 투자를 민간 협조로 실현하기 위해, 2030년도까지 1)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및 파워 반도체 양산 투자 등에 대한 보조 및 위탁에 약 6조엔, 2) 차세대 반도체 양산 투자 및 AI 활용을 위한 계산 기반 장비 등에 대한 출자 나 채무 보증 등 금융 지원에 약 4조엔 이상, 총 10조엔 이상의 공적 지원을 실시할 예정(출처: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4/1122_taisaku.pdf, 검색일자: 2024. 12. 9.)
- 3) 2023년 11월 발표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에 따라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에 따라 각종 지원금 및 정책감세를 실시(출처: 일본 총리실 홈페이지, <https://www.cas.go.jp/jp/seisaku/benefit2023/index.html>, 검색일자: 2024. 12. 9.)
- 4) 다른 항목에 정리되어 있는 사업도 포함한 금액
- 5) 1948년 제정된 구 「유생보호법」에 따라 법률이 존재하는 동안(1948년 9월 11일~1996년 9월 25일) 우생 수술 등을 받은 사람에게 일시금을 지급(출처: 일본 법령정보 홈페이지, 「旧優生保護法に基づく優生手術等を受けた者に対する一時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平成三十一年法律第十四号)」, <https://laws.e-gov.go.jp/law/431AC1000000014>, 검색일자: 2024. 12. 9.)
-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第1号)の概要」, 2024. 11. 29.,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hosei241129c.pdf, 검색일자: 2024. 12. 2.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2분기⁴⁰⁾ 예산사용 현황⁴¹⁾ 발표(2024. 12. 6.)⁴²⁾

- 2024회계연도 2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4조 7,210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6조 2,192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11조 4,982억엔 초과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2분기

수입비율은 13.0%로 전년 동기 대비 6.1%p 감소 하였으며, 이는 특별공채금 등의 감소에 기인

- 2024회계연도 2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4.5%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3.5%로 전년 동기 대비 1.3%p 감소

40)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 4. 1.~2025. 3. 31.로, 2024회계연도 2분기는 2024. 7. 1.~2024. 9. 30.을 의미

41) 예산사용현황(予算使用の状況)은 「재정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국회 및 국민에 대한 보고로서, 각 부처 등이 매월 일반회계의 세목별 조세 등의 수납 상황과 소관·조직·행별 지출 상황 및 특별회계 등의 수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재무성에서 분기별로 집계한 것

42)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2 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12. 6.,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4/06_2gai.html, 검색일자: 2024. 12. 10.

표 9 일본의 2024회계연도 2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125,716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¹⁾ (D)	1,236,349	세입예산액(A)	4,406,099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¹⁾ (D)	4,406,478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47,210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62,192	2분기 국가 수납 금액(B)	1,081,164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037,38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3.0 (19.1)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2 (21.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4.5 (22.6)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3.5 (24.8)
2분기 누계(C)	283,883	2분기 누계(F)	612,942	2분기 누계(C)	2,460,721	2분기 누계(F)	2,390,970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25.2 (20.4)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49.5 (47.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5.8 (55.6)	이번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54.2 (56.3)

-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 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12. 6.

- ◆ 일본 내각부, 2025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2024. 12. 6.)⁴³⁾
- 2025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⁴⁴⁾에 따라 편성하며, 고물가 및 임금·조달가격 상승에 대응하면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 탈피하여 ‘임금 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의 보급·정책, 지방창생 2.0⁴⁵⁾ 시행, 민관 제휴에 의한 투자 확대,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⁴⁶⁾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포함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저출산·아동 정책 시행 등 주요정책과제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
- 2025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를 바탕으로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하면서 ‘중기적인 경제·재정의 틀에 따라 예산편성을 실시한다. 단, 중요한 정책의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편성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를 바

43) 일본 내각부, 「令和7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4. 12. 6.,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4/r7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4. 12. 10.

44)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4」는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4년 6월 21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6월 재정동향」, p. 25를 참조,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 검색일자: 2024. 12. 13.

45) ‘지방이아말로 성장의 주역’이라는 생각이 근거하여, 지방이 각각의 특성에 따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본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 대규모 지방창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내각에 「새로운 지방 경제·생활 환경 창생 본부」를 설치함. 이를 통해 도시 및 지방이 모두 안심·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의 모든 관계자가 희망·열량 일체감을 되찾는 형태로 새로운 지방창생 정책인 ‘지방창생 2.0」을 시행할 예정(출처: 일본 내각관방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の設置について」, 2024. 10. 11., 검색일자: 2024. 12. 16.)

46)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관련 정책은 대규모 재해를 비롯한 자연 재해 대응,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의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재해 극심화 및 빈발화,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회 경제 시스템 기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 주요 기능 유지를 위해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정책」(2020. 12. 11.)을 발표하여 시행 중(출처: 일본 내각관방, 「防災・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5か年加速化対策」,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oujinka/5kanenkasokuka/pdf/taisaku.pdf, 검색일자: 2023. 12. 20.)

탕으로 경제·재정 일체 개혁의 공정을 구체화하면서,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일본 재무성, 2025회계연도 예산안 발표(2024. 12. 27.)⁴⁷⁾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9,698억엔 증가(2.6%)한 115조 5,415억엔 규모
- (세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한 115조 5,415억엔으로,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68조 2,452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9조 784억엔, 국채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28조 2,179억엔
- (세입)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6% 증가한 115조 5,415억엔으로, 세수는 전년 대비 12.7% 증가한 78조 4,400억엔,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조 4,525억엔, 공채금은 전년 대비 19.2% 감소한 28조 6,490억엔
- (국채) 2025회계연도 국채의존도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6.7%p 감소한 24.8%

- 2025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11월에 발표한 경제대책⁴⁸⁾과 2024회계연도 제1차 추경예산⁴⁹⁾과 더불어 '임금인상과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형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

- (개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4」을 바탕으로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세출개혁을 지속하고 주요 정책에 중점적으로 대응
- (주요 정책 과제 대응) 다년도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지방창생교부금 등 증액, 전 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등
 - ▶ (다년도 주요 정책 과제 추진) 재원을 확보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어린이 미래 전략'⁵⁰⁾을 바탕으로 한 아동·육아지원, GX투자 추진, AI·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등 다년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
 - ▶ (지방창생교부금 등 증액) 지방창생교부금 증액, 내각부방재담당 예산 및 정원 증가 등 주요 정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 (전 세대형 사회보장개혁 등) 약가 개정,⁵¹⁾ 고액 요양비 제도 재검토 등 전세대형 사회보장개혁, 교직원 근로 방식 개혁 등 주요 과제에 대응
- (경제재생과 재정건전화의 양립) 경제·물가 동향을

47)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01.pdf, 검색일자: 2024. 12. 30.

48) 일본 내각부, 「国民の安心・安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総合経済対策-全ての世代の現在・将来の賃金 所得を増やす-」, 2024. 11. 22.

49)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補正予算」, 2024. 11. 29.

50) '어린이 미래 전략'은 2023년 12월 각의 결정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없던 규모로 모든 어린이·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공동육아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출처: 일본 내각관방, 「こども未来戦略」, 2023. 12. 22.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b115de8-988b-40d4-8f67-b82321a39daf/b6cc7c9e/20231222_resources_kodomo-mirai_02.pdf, 검색일자: 2024. 2. 5.)

51) 일본 후생노동성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약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 개정을 실시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에는 신약개발 혁신 추진, 의약품 안정 공급 확보, 국민 부담 경감 등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근거로 약가 개정 기준을 적용할 예정(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7年度薬価改定について」, 2024. 12. 20., <https://www.mhlw.go.jp/content/12401000/001360046.pdf>, 검색일자: 2024. 12. 30.)

고려하면서 주요 정책과제에 대응하는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착실하게 추진, 지방의 일반재원 총액 확보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도 함께 추진

- ▶ 2025회계연도 예산의 국채발행액은 28조 6,490억엔으로 17년 만에 30조엔을 하회(당초예산 기준)
-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한 예산편성) 공무원·교직원·보육종사자 급여 개선, 공공 공사의 설계 및 노

무 단가 인상, 공립학교 시설 보조 단가 인상, 지방공공단체 공공조달 가격 전가⁵²⁾ 원활화(노무비 등), 하청, 트럭·물류, 건설 분야에 거래조사원을 투입하는 등 거래적정화 추진 등

- (경제·물가 동향을 고려한 세출 수준 설정)⁵³⁾ 인사원⁵⁴⁾ 권고 등을 반영하여 정책적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

표 10 일본의 2025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4회계연도 당초(A) ¹⁾	2025회계연도 정부안(B)	증감액 (B-A)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¹⁾	677,764	682,452	4,689	0.7
	사회보장관계비	377,193	382,778	5,585	1.5
	사회보장관계비 외	290,571	299,674	9,103	3.1
	방위력정비계획 ²⁾ 대상 경비	77,249	84,748	7,498	9.7
	일반 예비비	10,000	10,000	0	0.0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³⁾	10,000	-	-10,000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77,863	190,784	12,921	7.3
	국채비	270,090	282,179	12,089	4.5
합계	1,125,717	1,155,415	29,698	2.6	
세입	세수	696,080	784,400	88,320	12.7
	기타 수입	75,147	84,525	9,378	12.5
	방위력강화분	21,261	26,659	5,398	25.4
	공채금	354,490	286,490	-68,000	-19.2
	건설공채	65,790	67,910	2,120	3.2
	특례공채	288,700	218,580	-70,120	-24.3
	합계	1,125,717	1,155,415	29,698	2.6

- 주** 1)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2)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12.16.)
 3)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 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
-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7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4. 12. 27., p. 2 표를 참고하여 작성

52) 일본 정부는 에너지 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이 임금 인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무비, 원재료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출처: 일본 내각관방, 「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る価値創造のための転嫁円滑化施策パッケージ」, 2021. 12. 27.,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pdf/partnership_package_set.pdf, 검색일자: 2024. 2. 13.)

53) 일본은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을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사회보장관계비, 일반세출, 지방세출 수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관계비) 고령화에 따른 증가의 범위 내에서 사회보장관계비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제·물가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목표를 지속
 - (일반세출) 일반세출 중 비사회보장관계비에 대해 경제·물가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
 - (지방세출 수준) 국가의 일반세출 기조에 맞추면서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실질적으로 동일수준) 확보
 (출처: 일본 재무성, 「日本の財政関係資料」, 2024.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fiscal_condition/related_data/202410_00.pdf, 검색일자: 2024. 12. 30.)

54) 일본의 인사원은 국가 공무원의 채용, 근로 방법, 급여 등 인사제도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출처: 일본 인사원 홈페이지, <https://www.jinji.go.jp/>, 검색일자: 2024.12.30.)

- ▶ (사회보장관계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증가분에 연금 슬라이드⁵⁵⁾에 따른 변동분, 보육급여 상승분을 추가(약 2,500억엔)
- ▶ (비사회보장관계비) 최근 물가상승률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4회계연도 당초 기준(1,600억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인한 상당분을 증액(약 1,400억엔)

기타

◆ 일본 내각부, 2024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4. 12. 9.)⁵⁶⁾

- 전분기 대비 2024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연율 1.2%),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1.8%)로, 실질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⁵⁷⁾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1차 속보치와 동일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 0.3%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5%p로 민간최종소비지출, 정부최종소비지출 등의 하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6%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0.4%)에서 상향 조정

- (민간수요) 전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7%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 전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계절조정 방법 변경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된 0.7%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0.1%)에서 상향 조정된 0.4%,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2%)에서 상향 조정된 -0.1%를 기록
-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0.1%p)에서 상향조정
- (공적수요) 전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0.3%)에서 하향 조정
- ▶ 각종 통계의 반영 등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된 0.1%, 공적자본형성 증가율은 1차 속보치(-0.9%)에서 하향 조정된 -1.1%를 나타냄
-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수출입) 계절조정 방법 변경 등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1.1%로 1차 속보치(0.4%)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수입 증가율은 1.8%로 1차 속보치(2.1%)에서 하향 조정

55) 일본은 미래세대 연금의 급여 수준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 피보험자 및 평균 여명의 변동에 근거하여 거시 슬라이드 조정율을 설정, 임금 및 물가변동률에 이를 반영하여 연금액 개정율을 확정함(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6年度の年金額改定についてお知らせします」, 2024. 1. 19., <https://www.mhlw.go.jp/content/12502000/001040881.pdf>, 검색일자: 2024. 12. 30.)

56)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12. 9.,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12. 11.

57)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분기 대비 2024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2%(연율 0.9%),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2.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 2024, pp. 36-38,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147>, 검색일자: 2024. 12. 16.를 참고

표 1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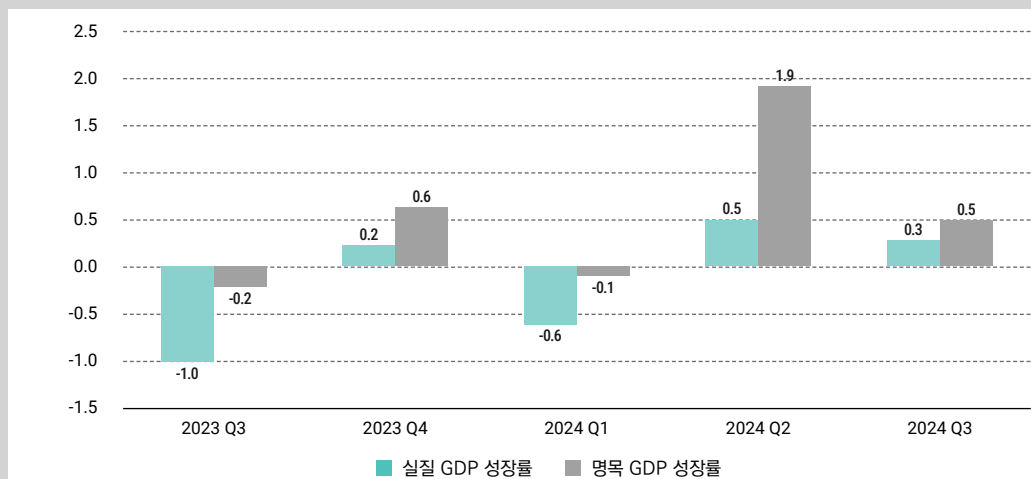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4년 ¹⁾
	Q3	Q4	Q1	Q2	Q3(1차 속보치)	Q3(2차 속보치)	
실질 GDP	-1.0	0.2	-0.6	0.5	0.2	0.3	1.2
국내수요	0.9	0.0	-0.2	1.0	0.6	0.5	2.0
민간수요	-1.3	0.2	-0.2	0.7	0.7	0.7	2.7
민간최종소비지출	-0.6	-0.1	-0.6	0.6	0.9	0.7	2.7
민간주택	-0.9	-0.9	-2.7	1.2	-0.1	0.4	1.4
민간기업설비	-0.3	2.0	-0.4	1.1	-0.2	-0.1	-0.5
민간재고변동	(-0.6)	(-0.1)	(0.4)	(-0.1)	(0.1)	(0.2)	-
공적수요	-0.1	-0.3	-0.2	1.7	0.3	-0.1	-0.2
정부최종소비지출	0.5	-0.0	0.2	1.0	0.5	0.1	0.6
공적고정자본형성	-2.1	-1.7	-2.1	5.2	-0.9	-1.1	-4.3
공적재고변동	(-0.0)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1)	(-0.4)	(-0.4)	(-0.4)	(-0.2)	-
재화·서비스 수출	0.6	3.0	-4.1	1.5	0.4	1.1	4.5
재화·서비스 수입	0.7	2.1	-2.4	3.3	2.1	1.8	7.4
명목 GDP	-0.2	0.6	-0.1	1.9	0.5	0.5	1.8
GDP 디플레이터	0.9	0.5	0.4	1.4	0.3	0.1	-

주 1.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2024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그림 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4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독일

예산·결산 등

- ◆ 연방 재무부 장관, 2025년 임시예산⁵⁸⁾에 대한 가능성 발표(2024. 12. 4.)⁵⁹⁾
- 독일 연방 재무부 장관 외르크 쿠키스는 2024년 연말까지 2025년 예산안이 연방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면서 임시예산 발표 시사
- 독일의 2025년 연방예산은 연방의회에서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았으며, 2025년 1월부터 임시예산(해당연도의 수입 예상액에 기반한 최소한의 집행 기준)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음
- 임시 예산 체제에서도 정부는 연금 및 아동수당 지급, 연방 교육지원법에 따른 학생 지원 등 기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기본법」 111조 1항⁶⁰⁾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정책 이니셔티브, 주요 투자 계획 등에는 제한이 따름
- 12월 17일 올라프 솔츠 총리가 최종적으로 재신

임을 얻지 못함에 따라 의회는 해산될 예정이며, 2025년 2월 총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연방정부 및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예정⁶¹⁾

- 국회의원 733명 중 717명이 출석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신임 207표, 불신임 394표, 기권 116표로 최종 불신임 결정
- 올라프 솔츠 총리는 대통령에게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제안 수락 시 선거일은 2025년 2월 23일로 예상
- 임시예산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정식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영됨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연방 내각은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할 예정
- 임시예산 기한은 당해 예산안이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이므로, 연방 재무부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각 부처의 요청을 토대로 협의하여 제출하여 국회는 이를 심의 및 승인하는 기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따름

58) 임시예산은 회계연도 초에 연방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본법 제 111조 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시 예산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규정은 연방예산법 제 5조에 따라 연방 재무부에서 결정. 2000년 이후 운영된 임시예산은 총 9차례이며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지속

59) 독일 연방 재무부, "Minister Kueks zur vorläufigen Haushaltsführung," 2024.1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Video-Textfassungen/2024/textfassung-2024-12-04-haushaltsfuehrung.html>, 검색일자: 2024. 12. 5. 독일 연방 재무부, "Fragen und Antworten zur vorläufigen Haushaltsführung," 2024. 12.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FAQ/vorlaeufige-haushaltsfuehrung.html>, 검색일자: 2024. 12. 18. 독일 연방 정부, "Weg frei für Neuwahlen," 2024. 12.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abstimmung-vertrauensfrage-2325612>, 검색일자: 2024. 12. 18.

60) 회계연도가 완료될때까지 다음해의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당해 예산안이 법률로써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일체의 지출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유지 및 법률이 정한 조치 실행, 2. 법규상 연방의 의무 이행, 3. 전년도의 예산에서 이미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간혹, 조달 및 그 밖의 급부를 계속하거나 이러한 목적에 대한 보조의 지속

61)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으로 구성된 신헌연립정부의 종료에 따른 조기 총선의 배경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2024년 11월호 참고

기타

◆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⁶²⁾ 제30차 회의 개최(2024.

12. 5.)⁶³⁾

- (주요 논의) 독일 재정 안정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예산원칙법」 제51조 2항에 따른 구조적 일관정부 적자 한도 준수와 잠재적인 예산 위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브레멘 재정회복 프로그램에 합의
- 독일은 현재 경제 성장과 공공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개정된 EU 예산 모니터링 체제를 위한 국내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
 -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가 탈탄소화, 인구 고령화,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
- 독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중기 재정 계획(FSP)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안정화위원회는 새로운 연방정부가 2026년 연방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한 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독일 총선으로 인해 중기 재정계획 제출이 2025년으로 연기된 상태이며, 안정화위원회는 국내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

- 안정화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연방 및 모든 주에서 부채제한을 준수했으며, 2025년도 대부분에서 준수할 것으로 예상
 - ▶ 잘란트의 예산 지표가 예산 위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위기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브레멘은 예산 위기가 예상된다고 공식적으로 확인
- 브레멘 주는 계속해서 예산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2028년까지 구조조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회⁶⁴⁾의 평가) 최근 안정화위원회는 재정 전망 및 재정적자 상한 준수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유럽 재정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절차를 시행하지 않아 EU 및 독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
- 자문위원회는 연방정부 수립 전까지 중기 재정 계획의 제출 연기와 새로운 재정 전망을 작성할 수 없다는 안정화위원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며, 2025년 봄까지 최신 재정 전망과 세수 추정치 작성 재개를 권고
- ▶ 모니터링 중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EU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재개를 권고

62)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장관, 주 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 여부를 파악해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63) 독일 연방 재무부, "30. Sitzung des Stabilitätsrates am 5. Dezember 2024," 보도자료, 2024. 12.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12/2024-12-05-30-sitzung-stabilitaetsrat.html>, 검색일자: 2024. 12. 9.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30. Sitzung 12/2024 Pressemitteilung, 2024. 12. 5., https://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Sitzungen/20241205_30.Sitzung/Pressemitteilung/20241205_Pressemitteilung.html, 검색일자: 2024. 12. 9.

64) 자문위원회는 「안정화위원회법(Stabilitätsratsgesetz)」 제8조에 근거해 의견 및 권고를 제시하여 재정 안정화위원회를 지원하는 독립적인 전문가으로 연방은행, 경제전문가위원회, 공동 경제진단(Gemeinschaftsdiagnose)에 참여하는 독일 경제연구소 대표,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보험에서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

표 12 독일 중앙은행의 12월 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변화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실질 GDP(달러조정)	-0.1	-0.2	0.2	0.8	0.9
실질 GDP(조정없음)	-0.3	-0.2	0.1	1.1	1.0
소비자물가지수	6.0	2.5	2.4	2.1	1.9
소비자물가지수(에너지, 식품 제외)	5.1	3.3	2.4	1.9	2.0

출처 독일 중앙은행, "The Bundesbank's Forecast for Germany: economy struggling with persistent headwinds," 2024. 12. 13.,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the-bundesbank-s-forecast-for-germany-economy-struggling-with-persistent-headwinds-947562>, 검색일자: 2024. 12. 17.

◆ 독일 중앙은행, 12월 독일 경제전망 발표(2024. 12. 13.)⁶⁵⁾

- 독일 중앙은행은 12월 경제전망 발표에서 독일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 역풍과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발표
- (경제성장률)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2%에서 2025~2027년에 각각 0.2%, 0.8%, 0.9%로 완만히 회복될 전망
- ▶ 수출과 투자 부문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 시장 및 임금 상승의 둔화로 인해 민간 소비의 증가세는 한정적일 전망
- (물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HICP)은 2024년 2.5%에서 2025년 2.4%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며, 2026년 이후 2%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및 채무) 일반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3년 2.6%에서 2027년 2.4%로 감소하고,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23년 62.9%에서 2027년 61.7%까지 감소할 전망

- ▶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시행된 정부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재정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자 지급, 사회 보장, 국방 지출 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위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지정학적 갈등, 구조적 변화 그리고 2025년 독일 총선 이후 경제-재정 정책 방향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독일 연방 통계청, 2024년 3분기 공공채무 통계 발표 (2024. 12. 19.)⁶⁶⁾

- 2024년 3분기 말 기준, 독일의 공공채무(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보장) 규모는 총 2조 4,886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3년 말 대비 435억유로(1.8%) 증가하고, 2024년 2분기 대비 285억유로(1.2%) 증가한 수준
- 2023년 말 대비 2024년 3분기 채무 수준이 연방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승하였으나 사회보장 부문은 1.7% 감소
- 2024년 3분기 연방정부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228억유로(1.3%) 증가
- ▶ 같은 기간 코로나19 경제안정화기금의 채무는 281억

65) 독일 중앙은행, "The Bundesbank's Forecast for Germany: economy struggling with persistent headwinds," 2024. 12. 13.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the-bundesbank-s-forecast-for-germany-economy-struggling-with-persistent-headwinds-947562>, 검색일자: 2024. 12. 17.

66)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im 3. Quartal 2024 um 43,5 Milliarden Euro höher als Ende 2023," 보도자료, 2024. 9.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12/PD24_482_713.html, 검색일자: 2024. 12. 29.

- 유로로 24.0% 감소한 반면, 연방군 특별기금의 채무는 155억유로로 166.7% 증가
- 2024년 3분기 주정부 채무는 6,061억유로로 2023년 말 대비 119억유로(+2.0%) 증가
- ▶ 2023년 말과 비교하여 채무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메클렌부르크-서포메라니아(+13.0%), 라인란트-팔츠(+10.6%), 베를린(+8.1%)순임
- 2024년 3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023년 말 대비 87억유로(+5.6%) 증가한 1,634억유로, 사회보장 채무는 4,030만유로를 기록

표 13 독일의 2024년 3분기 공공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총채무 규모		변화율
	2024년 9월 30일	2023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대비
합계	2,488,590	2,445,691	1.8
연방	1,719,104	1,696,384	1.3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28,059	36,912	-24.0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	71,744	-100
연방군 특별기금	15,486	5,808	166.6
주정부	606,086	595,418	1.8
지방자치단체	163,360	153,866	6.2
사회보장	40	22	81.8

주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의 채무는 2023년 말부터 종료되어 연방정부 핵심예산으로 이관됨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 "Genesis-online: Statistischer Bericht - Vierteljährliche Schulden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 3. Vierteljahr 2024," https://www.destatis.de/DE/Themen/Staat/Oeffentliche-Finanzen/Schulden-Finanzvermoegen/Publikationen/Downloads-Schulden/statistischer-bericht-vj-schulden-oeffentl-gesamthaushalt-2140520243235.xlsx?__blob=publicationFile, 검색일자: 2024. 12. 29.



프랑스

예산·결산 등

(2024. 12. 4.)⁶⁷⁾

◆ 프랑스 하원,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 및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의회에서 폐기

-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⁶⁸⁾의 의회 채택을 위해 의회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항*을 발동⁶⁹⁾

67)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Motion de censure : le gouvernement de Michel Barnier a démissionné," 2024. 12. 5.,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6487-article-493-sur-le-plfss-2025-censure-du-gouvernement-barnier>, 검색일자: 2024. 12. 11.

68) 프랑스는 중앙정부 예산법(LF)과는 별도로 사회보장부문 예산법(LFSS)을 편성

69) 프랑스 의회, "Engagement de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b0638-n0-rapport-fond>, 검색일자: 2024.12.11.

* 프랑스 「헌법」 제49조제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 정부 불신임안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가결되면 내각이 총사퇴하고 해당 법안은 폐기⁷⁰⁾

- 이후 좌파연합(NFP)⁷¹⁾과 국민연합(RN)⁷²⁾이 각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좌파연합이 발의한 불신임안이 하원 전체 577명 중 331표로⁷³⁾ 가결되어 이에 따라 2025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되며,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사임서를 제출⁷⁴⁾
- 내각 불신임안 통과에 따라 2025년 예산법안(PLF)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에 대한 심사가 중단되어 「예산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짐
- 의회가 기한 내 「예산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전년도 예산을 유지하는 임시적 예산인 특별예산을 법률 명령(Ordonnance)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음^{75), 76)}

- 이러한 경우 2024년에 승인된 예산의 구조를 기준으로 정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만 허용되며, 특별예산법은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 프랑스 재무부, 특별예산법안(loi spéciale pour une situation exceptionnelle) 발표(2024. 12. 11.)^{77), 78)}
- 내각 불신임안 통과로 2025년 「예산법」의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프랑스 재무부는 2025년 임시적 특별예산법을 발표함
- 「헌법」 제47조⁷⁹⁾와 「재정조직법」 제45조⁸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차년도 예산법을 공포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특별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은 12월 31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함
 - 1월 1일까지 해당연도의 「예산법」이 공포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기존 세금을 징수하고 필수적 재정지출을 할

70)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2. 10. 5.

71)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me Mathilde PANOT, M. Boris VALLAUD, Mme Cyrielle CHATELAIN, M. André CHASSAIGNE et 181 de leurs collègues,"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b0638-n2_motion-censure, 검색일자: 2024. 12. 11.

72)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présentée par Mme Marine LE PEN, M. Éric CIOTTI et 138 de leurs collègues," 2024. 12. 2.,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117b0638-n3_motion-censure, 검색일자: 2024. 12. 11.

73)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

74)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du 5 décembre 2024 relatif à la cessation des fonctions du Gouvernement," 2024. 12. 5.,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50748889>, 검색일자: 2024. 12. 11.

75)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2024. 12. 3.,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1.

76) 한국법제연구원, 「중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2011.

77) 프랑스 예산국, "Budget 2025 : une loi spéciale pour une situation exceptionnelle," 2024. 12. 11.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_de_finances/articles/budget-2025-projet-de-loi-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3.

78)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jet de loi spéciale prévue par l'article 45 de la loi organique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4. 12. 11., <https://www.vie-publique.fr/loi/296554-projet-de-loi-speciale-prevue-par-larticle-45-de-la-loi-organique-du-1er-aout-2001-relative-aux-lois-de-finances>, 검색일자: 2024. 12. 13.

79) 프랑스 법률 사이트,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2008. 6. 25.,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19241054, 검색일자: 2024. 12. 13.

80) 프랑스 법률 사이트,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2022. 9. 26., https://www.legifrance.gouv.fr/loda/article_lc/LEGIARTI000044611965, 검색일자: 2024. 12. 13.

-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예산법」을 제출⁸¹⁾
- 특별예산법안은 2025년 「예산법」이 채택될 때까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부문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조항이 포함
 - 특별예산법안은 기존 세금 징수 권한, 중앙정부 및 사회보장부문의 차입 승인 권한을 부여⁸²⁾
 - 해당 법안은 12월 16일 하원⁸³⁾, 12월 18일 상원⁸⁴⁾에서 채택되어 연말 공포될 예정



영국

예산·결산 등

- ◆ 영국 재무부, 「2022-23회계연도 공공부문 통합 결산 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⁸⁵⁾ 발표(2024. 11. 26.)⁸⁶⁾
 - (당기 순지출) 2022-23회계연도 당기 순지출은 -146억파운드(당기 순수입 14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42억파운드 감소하였는데, 재무부는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순지출이 344억파운드 과소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표 14) 참고
 - (공공서비스 순지출) 2022-23회계연도의 공공서비스 순지출은 1,59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7억 파운드 감소
 - ▶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2억파운드 증가, 총수입은 929억파운드 증가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2022-23회계연도 장기 부채 금융 비용은 -1,419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3,391억파운드 감소
 - ▶ 이는 주로 2022-23회계연도에 총당금의 단기, 중기, 장기 할인율이 모두 크게 상승하여 총당금⁸⁷⁾이 크게 감

81)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 2024. 12. 11.,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3.

82)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Qu'est-ce qu'une loi de finances spéciale ?," 2024. 12. 3., <https://www.vie-publique.fr/fiches/296434-quest-ce-quune-loi-de-finances-speciale>, 검색일자: 2024. 12. 11.

83)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spéciale prévue par l'article 45 de la loi organique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ADOPTÉ PAR L'ASSEMBLÉE NATIONALE EN première lecture," 2024. 12.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7/textes/l17t0020_texte-adopte-seance, 검색일자: 2024. 12. 19.

84) 프랑스 상원, "Projet de loi spéciale," 2024.12.18., <https://www.senat.fr/actualite/projet-de-loi-speciale-4223.html>, 검색일자: 2024. 12. 19.

85)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위임 행정부, NHS,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1만개 이상 계정에 대한 통합 감사 회계보고서

86)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Policy paper, 2024.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2-23>, 검색일자: 2024. 12. 2. National Audit Office, "Spending watchdog disclaims government's accounts for the first time," Press release, 2024. 11. 26., <https://www.nao.org.uk/press-releases/spending-watchdog-disclaims-governments-accounts-for-the-first-time/>, 검색일자: 12. 2.

87) Provision: 차기 이후의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 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각 기간의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으로, 영국의 경우 핵 폐기물(Nuclear Decommissioning) 처리, 임상 과실(Clinical Negligence) 관련 비용 등을 총당금에 설정

표 14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항목	2021-22회계연도	2022-23회계연도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	1,044.4	1,133.6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59.7	276.1
인건비(Staff costs)	284.5	306.7
재화, 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56.2	254.3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121.0	122.4
감가상각 및 감소(Depreciation and impairment)	47.9	52.8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47.1	85.1
기타(Other)	28.0	36.2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b]	881.6	974.5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774.7	857.7
기타수입(Other revenue)	106.9	116.8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b]	162.8	159.1
장기 부채 금융 비용(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c]	197.2	-141.9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d]	-0.4	-31.8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 [a-b+c+d]	359.6	-14.6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2024.11., p. 121, 재구성

소*했기 때문⁸⁸⁾

* 2021-22회계연도 1,499억파운드, 2022-23회계연도 -2,228억파운드

- (순부채) 2022-23회계연도의 순부채는 2조 3,891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조 4,858억파운드 감소하였는데, 재무부는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 순부채가 317억파운드 과대 계산되었을 것으로 추정(표 15) 참고
- (총자산) 2022-23회계연도 총자산은 2조 5,543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400억파운드 증가
- ▶ 이는 주로 토지, 건물, 도로 및 철도망 등의 유형고정자산 증가(949억파운드)에 기인

- (총부채) 2022-23회계연도 총부채는 4조 9,434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1조 3,458억파운드 감소

▶ 이는 주로 공공부문 연금 부채* 감소(1조 2,241억파운드)에 기인

* 공공부문 연금 부채는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의 변화와 물가상승률, 급여 상승, 기대 수명, 인력 규모와 같은 보험 수학적 가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음

- (감사 의견) 감사원은 잉글랜드 426개 지자체⁸⁹⁾의 회계 감사 지연(미처리, backlog) 문제로 인해 "의견을 형성할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를 얻을 수 없다"며 사상 최초로 공공부문 통합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거부(disclaim)

88) 할인율이 크게 상승하여 총당금이 음수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미래 경제적 상황이 현재에 비해 극도로 낙관적이라는 가정, 미래 지출 자체의 큰 불확실성, 미래의 기술적 발전이나 규제 완화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89) 행정 구역의 수가 아니라 통합 결산에 참여해야 하는 독립 회계 주체(계정)의 수를 의미

표 15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항 목	2021-22회계연도	2022-23회계연도
총자산(Total assets) [a]	2,414.3	2,554.3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40.4	1,435.3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724.8	721.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215.6	232.9
기타 자산(Other assets)	133.5	165.0
총부채(Total liabilities) [b]	6,289.2	4,943.4
공공부문 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2,639.1	1,415.0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575.7	1,754.0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1,334.0	1,251.2
충당금(Provisions)	527.8	306.9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212.6	216.3
순부채(Net liabilities) [b-a]	3,874.9	2,389.1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2-23," 2024.11., pp. 123-124, 재구성

- 426개 지자체 중 10%(43개)만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였고, 46%(196개)는 감사를 받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44%(187개)는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음⁹⁰⁾
-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감사 기한 고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2023-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감사 의견 거부 가능성은 높은 상황

기타

- ◆ 영국 고용노동부, 노동백서 *Get Britain Working* 발표(2024. 11. 26.)⁹¹⁾
- (개요) 비경제활동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양

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고용, 보건, 기술 지원에 대한 종합 개혁안

- (주요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노동 시장 참여 배제, 기술 또는 교육(훈련) 부족,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여성의 경력 단절, 노동력 부족과 기술 격차로 인한 고용주의 채용에 대한 어려움, 지역 또는 집단 간 노동시장 격차
- (주요 개혁안) 국가의료서비스(NHS) 확대, 지역사회 주도의 지원, 청년층 지원, 구직 및 경력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다음의 5가지 주요 개혁안을 제시
- (국가의료서비스 확대) 고용률 개선을 위해 NHS 및 광범위한 보건 시스템을 확대
- (지자체 주도의 지원)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위

90) 영국 공인회계사 협회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부족 심화, 감사 인력 부족, 감사 일정의 누적 지연 등으로 인해 외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을 통한 지자체의 자체 회계 감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데이터 미제출 추세가 2019-20회계연도 이후 증가하고 있음도 언급(2019-20회계연도 21개, 2020-21회계연도 155개, 2021-22회계연도 178개)(출처: ICAEW, "Spending watchdog disclaims government's accounts," Viewpoints December 2024, 2024. 12. 3., <https://www.icaew.com/insights/viewpoints-on-the-news/2024/dec-2024/spending-watchdog-disclaims-governments-accounts>, 검색일자: 2024. 12. 12.)

91) HM Treasury, "Get Britain Working White Paper," Policy paper, 2024. 11.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get-britain-working-white-paper>, 검색일자: 2024. 12. 2.

한 효과적인 일자리, 건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

- (청년층 지원) 18~21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견습 기회를 보장하는 Youth Guarantee 프로그램을 지원
- (구직 및 경력 지원 시스템 구축) 고용 촉진, 비경제 활동 문제 해결,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Jobcentre Plus⁹²⁾와 National Careers Service⁹³⁾를 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 및 경력 서비스를 구축
- (고용주 지원) 고용주가 건강하고 포용적인 직장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검토를 시행하되 다음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

◆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 2단계(Spending Review Phase 2) 작업개시(2024. 12. 12.)⁹⁴⁾

- (개요 및 배경) 지출검토는 보통 2~4년마다 이루어지는 중기 재정 지출 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
- 정부는 지출검토 1단계 결과를 10월 30일 발표된 「가을 예산안 2024」에 반영⁹⁵⁾하였고, 이어 2단계를 진행하여 「지출검토 2025」를 2025년 늦은 봄에 발표할 예정임을 밝힘
- (2단계 검토 방향) 공공부문 지출을 철저히 검토하여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세금이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

- (지출 항목별 정밀 검토) 모든 지출이 노동당 정부가 강조하는 '변화'를 위한 계획에 부합하고 비용 대비 가치(VfM)가 있는지 항목별로 정밀 검토(line-by-line review)를 통해 확인
- (제로 베이스 검토) 2007년 지출검토 이후 17년 만에 제로 베이스 검토(zero-based review) 방식⁹⁶⁾을 채택하여 모든 지출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 (우선순위 지출) 경제 성장 촉진, NHS 개선, 치안 강화, 청정에너지 발전, 아동복지 증진, 국경 및 국가 안보 강화 등의 주요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분하여 납세자의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
- (외부 전문가 검토) Lloyd's Banking Group, Barclays Bank, Co-operative Group⁹⁷⁾의 전직 고위 경영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독립적 검토를 수행
 - ▶ 패널은 정부 지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식별하고 절감 방안을 제안
- (우선순위 無기여 지출 중단)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기여하지 않는 지출은 중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침을 각 부처에 서한을 통해 전달
 - ▶ 이를 통해 정부가 낭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세금을 최우선 과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
- (VfM⁹⁸⁾ 평가) 비용 대비 가치가 낮은 지출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

92) 구직자와 고용주를 연결하고, 구직자에게 복지 혜택 및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는 노동 연금부

93) 경력 상담,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경력 개발을 돕는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는 정부

94) HM Treasury, "Chancellor: Every pound spent will deliver Plan for Change," Press release, 2024.12.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every-pound-spent-will-deliver-plan-for-change>, 검색일자: 2024. 12. 16.

95) 김빛마로·김정환·김은숙, 「주요국 예산안 - 영국 2024 가을 예산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24. 12., pp. 17~20 참고

96) 기존의 지출 항목과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 모든 예산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하는 방법. 즉, 기존 예산에 약간의 변화(증액 또는 감액)를 더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음

97) 영국 기반의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소매업, 금융, 장례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다각화된 기업 그룹

98) VfM 보고서는 감사원 홈페이지에 게시(<https://www.nao.org.uk/reports/>)

▶ 일례로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Social Workers in Schools 프로그램의 650만파운드 지출에 대한 평가를 이미 실시하였는데, 사회복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비용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호주

- ◆ 호주 통계청,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발표(2024. 12. 4.)⁹⁹⁾
- 2024년 3분기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GDP는 0.8% 성장
 - 최종소비지출은 가계 0.0%, 일반정부 1.4% 증가하여 전분기 대비 0.4% 증가
 - ▶ 가계 소비지출은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16.7%), 차량구매(-0.9%), 주류(-1.0%)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 의복 등(2.2%), 임대 및 기타 주거 서비스(0.4%), 보건(0.8%) 등의 지출이 증가
- ▶ 정부 소비지출은 주 및 지방정부(2.2%), 비국방분야(0.9%)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국방부문(-1.4%) 지출 감소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
- 총고정자본형성은 전분기 대비 1.5% 증가
- ▶ 전분기 대비 민간 투자 0.1% 증가, 공공 투자 6.3% 증가
-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

표 16 호주의 2024년 3분기 국민계정

(단위: %, 계절조정)

구분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4	1.7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1.4	4.7
가계(Households)	-	0.4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1.5	1.6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2	1.5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2	-1.1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0.3	2.7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3	0.8

출처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12. 4.

99)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12. 4.,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sep-2024>, 검색일자: 2024. 12. 9.

- ◆ 호주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반기경제·재정 전망 보고서」 발표(2024. 12. 17.)¹⁰⁰⁾
- 호주 재무부는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따라 반기경제·재정 전망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제 및 재정 전망보고서의 주요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세입·세출·채무명세서를 작성
 - (경제) 호주 경제성장률은 2023-24년 1.4%에서 2024-25년 1.75%, 2025-26회계연도 2.25%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가계 소비의 점진적인 회복과 정부의 생계비 완화 정책,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지속적 고용 및 임금 성장은 2024-25회계연도 가계의 실질 가치분 소득 성장을 견인하여 주요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률은 주로 상품가격 상승률 정상화에 기인하여 완화되고 있으며, 2025년 말에 증양은행의 목표 범위로 회복될 전망
 - 2022년 중반 이후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노동참여율은 정점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은 완화되고 있으나 10년 전 평균인 2.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임금은 견고한 임금 성장 및 완화된 물가상승으로 인해 예측기간 동안 증가할 전망
- 기업투자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주택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가 전망 기간 동안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재정) 현금수지는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후 2024-25회계연도에 269억 호주달러 적자가 예상되나, 전망기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2034-35회계연도에 균형재정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2024-25회계연도 적자는 선거전보고서(PEFO)¹⁰¹⁾ 대비 약 200억호주달러, 예산안 대비 14억호주달러 개선된 수치
- 수취(receipts)는 2024-25회계연도 예산 이후 향후 4년간 204억호주달러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수취는 25.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지급(payments)은 2024-25회계연도 예산 이후 향후 4년간 422억호주달러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지급은 2025-26회계연도에 27.2%까지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총채무는 2024-25회계연도에 34.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6-27회계연도에 36.7%로 안정화 된 후 예산 상황 개선 및 이자지급 감소에 따라 2034-35회계연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1.4%를 나타낼 전망

100)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25," 2024. 12. 17., 검색일자: 2024. 12. 18., <https://budget.gov.au/content/myefo/index.htm>

101) 호주 재무부,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2," 2022. 4. 20.,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2022-pefo>

표 17 예산총량 및 채무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전망							
	2024-25회계연도		2025-26회계연도		2026-27회계연도		2027-28회계연도	
현금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MYEFO	-26.9	-1.0	-46.9	-1.6	-38.4	-1.3	-31.7	-1.0
Budget	-28.3	-1.0	-42.8	-1.5	-26.7	-0.9	-24.3	-0.8
수취(Receipts)								
MYEFO	704.2	25.5	728.4	25.5	763.4	25.4	804.1	25.4
Budget	698.4	25.3	719.4	25.1	760.0	25.1	801.8	25.2
지급(Payments)								
MYEFO	731.1	26.5	775.3	27.2	801.7	26.7	835.7	26.4
Budget	726.7	26.4	762.2	26.6	786.7	26.0	826.2	26.0
총채무(Gross Debt)								
MYEFO	940.0	34.0	1,028.0	36.0	1,100.0	36.7	1,161.0	36.7
Budget	934.0	33.9	1,007.0	35.1	1,064.0	35.2	1,112.0	34.9
순채무(Net Debt)								
MYEFO	540.0	19.6	609.3	21.3	669.2	22.3	708.6	22.4
Budget	552.5	20.0	615.5	21.5	660.0	21.8	697.5	21.9

출처 호주 재무부,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24-25," 2024. 12. 17., p. 51 (Table 3.1)



네덜란드

◆ 네덜란드 재무부, 「가을각서(Najaarsnota 2024)」¹⁰²⁾ 발표(2024. 11. 29.)¹⁰³⁾

※ 네덜란드 재무부는 매년 12월 1일 전까지 최종 예산 보고서인 가을각서(Najaarsnota)를 의회에 제출하며 예산집행과정을 보고하고 정책의 변경이나 재정 흑자 또는 적자가 있었을 경우 이를 반영

- (재정전망) 2024년 재정적자는 2025년 예산안 대비 0.1%p 개선된 GDP 대비 1.5%로 수정 전망하

였으며, 이러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주로 2024년에 집행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 때문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4,056억유로)에 비해 약 1억 1,500만유로 하향조정되어 4,055억유로로 수정 전망
- ▶ 2025년 예산안과 비교한 하향조정의 대부분은 환경세, 양도세, 소비세 등 간접세 감소에 기인

102) 가을각서는 2024회계연도의 지출 및 수입에 대한 최신 상황을 제공하며, 이는 9월 2025년 예산안 합의 이후 2024년에 발생한 변화와 2025년 예산안의 변경 사항을 보여줌

103)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https://www.rijksfinancien.nl/najaarsnota/2024>, 검색일자: 2024. 12. 9.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지출¹⁰⁴⁾은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4,234억유로)에 비해 약 16억 유로 감소한 4,218억유로로 수정 전망
- ▶ 2025년 예산안과 비교한 지출 감소분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및 비군사적 지원 감소(-15억 4,900만유로)에 기인
- ▶ 2024년 가을각서의 지출체계¹⁰⁵⁾ 내 순지출¹⁰⁶⁾은 2025년 예산안(3,960억유로) 대비 1억유로 증가한 3,961억 유로
- 2024년 국가채무는 예산안의 추정치(44.2%)대비 0.3%p 개선된 GDP 대비 43.9%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채무 개선은 그리스에 제공한 대출금 회수(4억 8,000만유로)¹⁰⁷⁾에 기인
- (과소집행) 2024년 가을각서 기준 과소집행 목표(예산 미집행)¹⁰⁸⁾는 2025년 예산안 대비 32억 4,200만유로 감소한 총 51억 9,100만유로
- 2025년 예산안 기준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은 총 84억 3,300만유로
 - ▶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2024년 과소집행 목표는 총 50억 1,900만유로로 설정되었음
 - ▶ 최근 몇 년간 부처 예산에서 과소집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더 현실적인 예산집행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 정부는 2024년에 추가 과소집행 목표로 35억 유로를 설정했음
- 2024년 가을각서 기준 32억 4,200만유로의 과소집행이 달성되었으며, 총 51억 9,100만유로가 여전히 충족되지 않음
 - ▶ 2024년 「가을각서」 기준 달성된 32억 4,200만유로의 과소집행은 부처별 예산 미집행분 21억유로와 사회 및 고용 분야, 보건, 복지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예산 초과 및 부족의 결과 12억유로¹⁰⁹⁾로 구성
- 결론적으로, 남은 과소집행 목표금액이 연말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2024년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것임

104) EMU 수지와 관련된 총지출

105)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연간 지출 프레임워크(지출 체계)가 있음. 정부는 2024년 예상된 지출 수준이 설정된 지출 프레임워크 내에서 유지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임. 출은 지출 체계에 포함되는 지출과 포함되지 않는 지출로 구분됨. 예를 들어, 지출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에는 대출 비용, 정부의 사회보장기금 보험료,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이 있음

106) 순지출은 지출에서 세외수입을 공제한 것을 의미

107)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구제 금융: 2010년대 초, 그리스는 재정 위기로 인해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해 국제 지원이 필요했으며,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형태의 지원을 제공했음. 그리스 경제가 안정되고 재정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기 시작했음. 네덜란드는 그리스에 제공한 대출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받게 됨으로써 네덜란드의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하며 재정상태가 개선됨

108) 과소집행 목표의 의미와 실행 방식

- 과소집행 목표는 연말 잔여 예산(이월 예산)의 반대되는 개념임. 연말 잔여 예산은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최대 전체 예산의 1%까지만 가능함. 특정 예산 기금(예, 국방장비 기금, 델타 기금, 모빌리티 기금)의 경우 100% 이월이 허용됨
- 이월 예산으로 인해 지출 한도가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만큼의 과소집행 목표가 동시에 계상됨. 이로 인해 다음 해로 이월된 예산은 추가적인 지출 여유분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이월 예산은 연도 중 과소집행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쇄됨
- 과소집행 목표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할당되지 않고 연도가 진행되면서 점차 채워지며, 이 목표의 실질적 실행은 과소지출(미집행)이나 다른 예산의 예상외 수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109) 이는 예산 초과분과 부족분을 합친 순효과

표 18 주요 재정지표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	2024년 가을각서의 2024년의 추정치
일반정부 재정수입	405.6	405.5
일반정부 재정지출	423.4	421.8
- 지출체계 내 순지출	396.0	396.1
- 기타 순지출 및 수정	27.4	25.7
일반정부 재정수지	-18.5	-17.0
(GDP 대비 %)	-1.6%	-1.5%
국가채무	498.8	495.2
(GDP 대비 %)	44.2%	43.9%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표 19 2024년 재정수입 추정치 비교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5년 예산안의 2024년 추정치	2024년 가을각서의 2024년의 추정치	차이
간접세(A)	117,303	117,129	-174
판매세	78,778	78,778	0
개별소비세 ¹⁾	12,281	12,144	-137
환경세	6,612	6,440	-172
자동차세	4,983	4,983	0
수입세	3,929	4,198	269
보험료 세금	3,953	3,953	0
양도세	3,723	3,610	-113
승용차 및 오토바이 특별세	1,402	1,402	0
은행세	608	608	0
무알콜 음료 등에 대한 소비세	648	627	-21
대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	207	207	0
한계 이하 세금(Inframarginale heffing) ²⁾	179	179	0
직접세 및 국민보험료(B)	193,164	193,223	59
근로소득세	136,720	136,859	139
법인세	46,109	45,509	-600
배당세	5,810	6,144	333
상속세 및 증여세	3,402	3,606	204
도박세	1,064	1,064	0
이자 및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세	59	41	-18
기타 세금(C)	376	376	0
총세금 및 국민보험료(D=A+B+C)	310,842	310,727	-115
직장보험료(E)	94,724	94,724	0
재정수입(D+E)	405,567	405,451	-115

출처 1) 담배 및 알코올, 설당 함유 음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2) 전기세 구조에서 전기 소비량과 무관하게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는 기본 요금이나 고정 요금을 의미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표 20 2024년 과소집행 목표 및 과소집행 달성

(단위: 백만유로)

항목	2024년
2025년 예산안 기준 2024년 과소집행 목표(A)	-5,019
2025년 예산안 기준 2024년 추가 과소집행(B)	-3,500
2025년 예산안 기준 달성된 과소집행(C)	86
2025년 예산안 기준 총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D=A+B+C)	-8,433
2024년 「가을각서」 기준 달성된 과소집행 목표(E)	3,242
2024년 「가을각서」 기준 과소집행 목표 및 추가 과소집행(F=D+E)	-5,191
- 과소집행 목표	-1,691
- 추가 과소집행	-3,500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Najaarsnota 2024," 2024. 11. 29.



스웨덴

-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 전망 발표(2024. 12. 18.)¹¹⁰⁾
 - (경제 전망) 스웨덴 경제는 장기 경기침체 상태에 있으나, 2025년 초부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가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 회복이 기대되며, 이는 이자 비용 감소와 실질 소득 증가에 기인
 - ▶ 주택시장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 건설 및 투자 회복세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2026년 주택 투자가 증가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2.0%로 목표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시장) 2024년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2025년 이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
- ◆ 스웨덴 통계청,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11. 29.)^{111), 112)}
 - 스웨덴의 2024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재고변화의 영향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0.3% 증가

110) 스웨덴 재무부, "Lågkonjunkturen dröjer sig kvar men ekonomisk återhämtning i sikte," 2024.12.18.,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12/lagkonjunkturen-drojer-sig-kvar-men-ekonomisk-aterhamtning-i-sikte/>, 검색일자: 2024. 12. 19.

111) 스웨덴 통계청, "GDP increased in the third quarter 2024," 2024. 11. 29.,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statistical-news/national-accounts-second-quarter-2024/>, 검색일자: 2024. 12. 20.

112) 스웨덴 통계청, "GDP Quarterly 1993-2024:3,"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rea/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national-accounts-quarterly-and-annual-estimates/pong/tables-and-graphs/tables/gdp-quarterly/>, 검색일자: 2024. 12. 20.

표 21 2023~2027년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연간 변화율, %)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4. 12. 18. 발표 기준	GDP	-0.2	0.6	2.0	3.0	2.5
	CPI	8.5	2.8	0.4	1.6	2.1
	CPIF	6.0	1.9	2.0	1.8	2.0
	민간소비	-2.2	0.2	2.3	3.0	2.7
	실업률 (15~74세 노동력)	7.7	8.4	8.4	8.1	7.6
	고용률 (15~74세 노동력)	1.4	-0.5	0.3	1.1	1.1
	정책 금리	3.46	3.62	2.22	2.00	2.00
2024. 9. 발표 기준	GDP	-0.2	0.8	2.5	3.2	2.4
	CPI	8.5	2.8	0.9	1.4	2.1
	CPIF	6.0	1.9	1.7	2.0	2.0
	민간소비	-2.3	0.3	2.9	4.1	3.1
	실업률 (15~74세 노동력)	7.7	8.3	8.3	7.9	7.6
	고용률 (15~74세 노동력)	1.4	-0.2	0.7	0.8	0.8
	정책 금리	3.46	3.66	2.57	2.00	2.00

출처 스웨덴 재무부, "Nyckeltal-prognos-18-december-2024," 2024. 12. 18.,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prognoser/>, 검색일자: 2024. 12. 19.

- (최종 소비 지출) 가계 최종 소비는 전분기 대비 0.0%, 일반 정부 소비는 전분기 대비 0.4%로 나타남
- ▶ 가계 최종 소비는 식품 및 비 알코올 음료에 대한 지출 증가는 레스토랑 및 숙박 서비스 지출 감소로 상쇄되어 실질적으로 변동 없음
- ▶ 일반 정부 소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비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0.4% 증가
- (재고변화) 산업 재고 증가에 기인하여 GDP 성장률에 대한 재고변화 기여도는 0.6%p로 나타남
- (총고정자본형성) 건물 및 건설 투자 증가로 인해 전분기 대비 0.3% 증가

표 22 스웨덴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¹⁾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3년 Q1	2023년 Q2	2023년 Q3	2023년 Q4	2024년 Q1	2024년 Q2	2024년 Q3
GDP 성장률	0.2	-0.3	0.3	-0.2	0.8	-0.3	0.3
가계 최종 소비	-1.8	0.2	0.0	0.5	-0.6	-0.2	0.0
일반 정부 소비	0.1	0.3	0.0	0.4	0.3	0.1	0.4
총고정자본형성 ²⁾	-0.3	-0.1	0.1	-1.6	0.2	-1.7	0.3
수입	-0.2	0.2	-1.6	0.9	0.6	-0.6	1.7
수출	1.1	-0.2	1.6	0.3	-0.1	1.0	0.6

주 1) 계절 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출처 스웨덴 통계청, "GDP decreased in the third quarter 2024," 2024.11.29., GDP - Expenditure approach 및 National Accounts, quarterly and annual estimates를 참고하여 재구성

- (수출입) 수출 및 수입은 각각 0.6%, 1.7% 증가하였으며, 상품 순수출의 부진으로 인해 순수출은 GDP 성장에 -0.5%p 기여함
- ◆ 스웨덴 통계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2.50%로 인하(2024. 12. 19.)¹¹³⁾
- (배경) 경기 회복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회복세가 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를 결정
 - (정책금리 결정) 2024년 스웨덴 정책금리는 2.75%에서 2.50%로 0.25%p 인하됨
 - (전망) 인플레이션과 경제전망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책금리는 2025년 상반기 한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됨
 - (위험요인) 경제활동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지정학적 불안,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유럽 내 정부위기 재발생 등 대외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작용

표 12 스웨덴 정책금리 인하 경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2월	5월	7월	9월	11월	2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기준금리	2.50	3.00	3.50	3.75	4.00	4.00	4.00	4.00	3.75	3.75	3.50	3.25	2.75	2.50
변동폭(%p)	+0.75	+0.50	+0.50	+0.25	+0.25	0.00	0.00	0.00	-0.25	0.00	-0.25	-0.25	-0.50	-0.25

출처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표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113) 스웨덴 통계청, "Styrräntan sänks med 0,25 procentenheter till 2,5 procent," 2024. 12. 19., <https://www.riksbank.se/sv/press-och-publicerat/nyheter-och-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4/styrrantan-sanks-med-025-procentenheter-till-25-procent/>, 검색일자: 2024. 12. 2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l.343

월간

재정포럼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5년 1월 17일 발행 | 제343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 414-2137 | 월간 | ISSN 1226-2269 10